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3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2.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4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2.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4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장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모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란 정권이 마지막으로 집행한 24년 결산심사를 합니다. 정부 기관의 잘못된 예산집행, 혈세 낭비 등을 더욱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소 위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결산심사처럼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산심사에 적극 응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에 임하는 부처, 기관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으로 나라 곳간을 악화시킨 무능한 내란 정권하에서 지난해 법무부는 4조 4200억, 대법원은 2조 2600억, 감사원은 1473억, 헌법재판소는 567억, 법제처는 454억, 공수처는 15억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드러나면 잘못을 통감하고 시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과정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특경비에 대한 자료 요구를 수차례 했었고 국정감사의 자료 요구로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활비, 특경비는 전액 삭감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2차 추경을 통해서 올해 복원하기는 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 선택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예결소위는 24회계연도 결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예산집행의 이정표로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소위원장 장경태**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장경태 소위원장님, 그렇게 지금 모두발언에서 내란 정권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씁니까? 판결이 내려졌어요? 내란의 정확한 용어를 아시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헌법재판소 판결문 보시고요.

○**송석준 위원** 이게 확정이 된 용어를……

○**소위원장 장경태** 제가 송석준 위원님 발언 기회 안 드렸습니다. 언론 계속 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요.

○**송석준 위원** 내란 발언을 함부로 하시면 예산심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성윤 위원** 발언 기회 얻고 하세요. 발언 기회 얻고 하시라고요.

○**소위원장 장경태** 발언 기회 아직 안 드렸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열려 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발언을 좀 조심하세요. 또 그 내란 정권라는 게 뭐니까, 내란 정권이라는 게? 지난 정부 심사를 그러면 내란 정권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내란 정권 결산심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송석준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내란으로 다 포장으로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한다면 어떻게 이걸 예산결산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 소위원장 장경태** 내란, 불법, 위헌 그리고 내란정당 혹은 내란수괴가 소속된 정당과 지금 이렇게 결산심사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 송석준 위원** 우리가 언어 사용을 우리 법사위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 주진우 위원** 아니, 위원장이 그렇게 고함 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지금 발언 기회도 안 드렸는데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디 있습니까?
- 이성윤 위원** 아니, 왜 의제하고 상관없는 발언하고, 왜 의제하고 상관없는 발언하십니까?
- 주진우 위원** 아니, 소위에서 발언 자유롭게 하는 거지요.
- 소위원장 장경태** 국회법 어기고 계시잖아요.
- 송석준 위원** 국민들 앞에서, 언론 바로 앞에 불러서 용어를 제대로 쓰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서 궁정도 부정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
- 이성윤 위원** 아니,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 소위원장 장경태** 발언권을 안 드렸는데 지금 발언하고 계시니까 지적하는 거잖아요.
- 송석준 위원** 거기다 갖다가 특검이라는 것 말이지요. 내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 주진우 위원** 현재에서 내란 판단이 있었습니까? 현재에서 내란 재판 있었어요?
- 이성윤 위원** 아니, 내란이 내란이지 뭐니까? 이미 다 헌법재판소 확정됐고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또 뭐가 필요해요?
-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지금 법사위원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시는 발언하시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입니까, 송석준 위원이? 나경원 위원이냐고요.
- 송석준 위원** 아니, 국민들의 속은 타들여 가는데 특검은 또 연장하겠다고요? 어제 연장 조치했지요, 소위에서?
- 이성윤 위원** 아니, 이것 지금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고……
- 송석준 위원** 아니, 특검이라는 것이 필요최소한에 보완적으로 야당이 요구해서 하는 건데……
- 소위원장 장경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송석준 위원님, 오늘 결산심사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송석준 위원** 이거 지금 결산이 중요합니까?
- 주진우 위원** 아니, 본인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 이성윤 위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도대체 여기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 송석준 위원** 아니, 그렇게 내란 정부라고……
- 소위원장 장경태** 발언 기회 안 드렸다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리려고 했는데……
- 송석준 위원** 그렇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 소위원장 장경태** 조용히 하세요. 마이크 꺼 주세요.
- 송석준 위원** 더구나 특검은 또 연장을 했어요, 어제. 어제 법안소위의 문제가 심각해요!
-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발언 기회드리려고 했는데……
- 이성윤 위원** 발언 기회 받고 하세요!

- 소위원장 장경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시잖아요.
- 주진우 위원** 아니, 본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위원장이.
- 송석준 위원** 여기 법무부차관 왔으니까……
- 이성윤 위원** 발언 기회 받고 하시라고요, 좀!
-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장 모두발언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모두발언한 거고요. 소위원으로서 발언 신청하시고 하세요.
- 송석준 위원** 그러면 정식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김기표 위원** 이미 다 하셨네요, 뭐. 이미 다 하셨잖아요.
- 이성윤 위원** 이미 다하신 걸 또 해요? 다 들었어요.
- 소위원장 장경태** 이미 다 하셨으니까…… 언론인분들……
- 송석준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할게요.
- 주진우 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김기표 위원** 그만하셔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 예결소위에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아닙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언론인분들 다 이석하셨나요? 행정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 송석준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 이성윤 위원** 아니, 위원님은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으세요?
- 송석준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자료.
-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일단 개별발언 하지 마시고요. 언론인분들 다 이석하셨다고 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10시13분)

-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6개 기관을 모두 심사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보

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이 있는 사항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기관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환철 전문위원께서 시정요구유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자리에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관련해서 소위원회 심사 참고 자료 세 쪽짜리가 있습니다. 세로로 인쇄된 심사 유형 개요인데요.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쪽짜리입니다.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장 장경태 제도개선, 시정요구 구두로 하셔도……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크게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일단은 구두로 하고 바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돼서 심사 유형으로 저희들이 상정할 수 있는 게 시정요구가 기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례적으로 부대의견도 했고요 감사요구도 있는데 시정요구는 국회법 84조에 있습니다. 변상, 징계 조치 등 시정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조항이 국회법 84조에 있고요.

시정요구 유형으로 예결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먼저 변상이라는 것은 법령을 위반해서 국가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 변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징계는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은 위법·부당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이나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요. 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 유형을 바로 할 수 있고요. 제도개선은 법령·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게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이 또 있는데요.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이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게 부대의견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요구가 가능한데요. 이것은 국회법 127조의2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감사요구의 요건은 조금 엄격해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고, 사안을 특정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결산심사 하다 보면 여러 부처의 미흡함 또 보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인 제도개선부터 최고 단계인 변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도개선 사안이나 정책결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감사원 감사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관 출석에는 이진수 법무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배부해 드린 법무부 소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개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시정요구 유형으로 법무부에는 58건의 유형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안이 있고요.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장경태 소위원장께서 감사요구 4건이 있었고요. 참고로 법무부에는 부대의견은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부처 실국 의견이 좀 있는 교정본부부터 먼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본부, 자료 97쪽입니다.

교정본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본부는 전체 9건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는 데요. 43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기관별 예산안, 세부 사업명세서를 미보유하고 미관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정본부 설명을 좀 올리면,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서울구치소하고 대구, 대전, 광주 등 이렇게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는데요. 교정본부에 구치소·교도소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요구하였으니다마는 실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집행의 투명성·책임성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 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장경태 위원님의 시정요구가 있고요.

44번, 98쪽입니다.

교정본부의 결산자료 미제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장경태 소위원장님이 있으신데요. 43번하고 동일한 취지로 제출된 건데요. 과밀수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교정본부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에 관련된 답변 자료제출이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예산 집행과 자료제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징계 시정요구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번,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미해결한 데에 대해서 징계와 감사 청구 있습니다.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정본부에서는 2016년부터 24년까지 약 200억 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니다마는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과 관련해서 자료제출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46번 10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전용인데요. 교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현재 결정이 있었음에도 해당 예산을 전용해서 상용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의 사업 비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그에 관련돼서 구치소 내 과밀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관련 자료 제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47번, 비목 성격에 맞는 예산집행이 필요한데요. 대구교도소 개청식 행사 대행을 하면서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는데, 일반수용비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개청식 행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이 아니냐, 일반용역비가 더 적절한 비목이라고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게 더 맞겠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요.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교도소, 특히 의정부교도소 등과 관련된 공무직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여러 위원님께서 계신데요.

광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의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 김기표·박군택 위원. 그리고 또 광주·의정부교도소 사업 승인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성윤·장경태·주진우 위원님의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49번, 노후 교정시설 예산 확보하고 교정시설에 의료인력 확충을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수용률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또 고령·질병 수용자도 증가되고 교정시설 자체도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관련해서 박준태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의무관 보수가 현실화 안 돼서 의무관이 부족한 이런 부분도 확충하라는 장경태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108쪽으로 가겠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의 경우에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맞도록 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지침에 맞지 않게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고요. 시정요구는 심리치료팀 구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110쪽으로 가겠습니다.

51번,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하라 하고 교정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법무부 교도소 운영 인건비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이 많이 되고 또 불용되거나, 그럼에도 연례적으로 인건비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박은정 위원께서 보안배치 개소와 관련돼서 실시한 운전직렬 교도관 근무체계 개편 설문조사 설문지 및 답변 통계와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표 제출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요. 또 교정직 공무원 확충 방안과 관련돼서 문건을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요.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충원을 위해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장경태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장경태 위원님이 감사요구를 4건 해 주셨기 때문에 128쪽의 이것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감사요구인데요. 취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정시설 기관별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미보유·미관리에 대한 감사요구가 있었고요. 또

결산심사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방해행위를 한 데 대해서 감사요구가 있고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예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구가 있고요. 또 4번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 교정본부와 관련된 결산이 97페이지부터 쭉 있고요 128페이지에 일괄 정리되어 있습니다. 크게 교정시설의 기관별 결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 또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의지나 또 이전용 내역 등이 확인돼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전부 모아서 일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번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감사청구를 지적 제외로 시정요구를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독립된 주체는 중앙관서인 법무부이고요 예산안은 사업·기능별로 구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소속기관별로 세부사업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는 58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기능별로 구분해서 편성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은 검찰도 다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법무부에서 자료요구도 성실히 응하겠습니다만 이 지적에서는 제외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44번 관련해서는 교정본부 결산자료 미제출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고 자연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의원실을 방문해서 설명드리며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법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어서 제출기한보다 늦게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면서 이 건 지적에서는 제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45번 관련해서는 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 문제 미해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은 징계, 감사 청구에서 제도개선으로 낫춰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2016년 이후 저희가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수용 인원을 3630명을 증원한 상태입니다. 지금 과밀수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원인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2022년에 수용자가 5만 1000명대였습니다만 지금 3년이 지난 25년에는 6만 2900명으로 약 1만 1000명이 늘어나서 과밀수용률도 104%에서 125%로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하시는 데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46번 사업목적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전용 관련해서는 징계, 감사 청구에서 지적 제외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2024년 상용직 근로자의 퇴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퇴직금 등 고용부담금 부족분 5억 9200만 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전용하게 된 것이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사업에서 전용되었습니다만 이게 사업비와 낙찰가의 차액에서 남은 예산안을 법정 의무사항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재정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용한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

니다.

47번 비목에 맞는 예산집행 필요성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48번 교도소 공무직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 지연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이며 의견이 없습니다.

49번, 노후 교정시설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및 의료인력 확충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법무부에서 의견이 없습니다.

50번,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도록 한 심리치료 인력 확보 부분도 의견이 없습니다.

51번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및 인력 충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다만 내용 중에 운전직렬 교도관의 근무체계 개편 설문,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표, 교정직 공무원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 그리고 비공개 사안의 필요성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서 찾아뵙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방안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장경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결산 내역을 보니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집행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자료제출 잘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관님 입장이 어떠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일단 검찰국 파트 지적사항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비해서 지금 국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정부의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부분도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의 성격 때문에 저희가 전부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및 결산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일을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과거보다는 더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과거에 비해서 추가로 제출했던 자료도 있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설명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잠깐 옆에 직원들 누군지, 자기소개 좀 하시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입니다.

○**송석준 위원** 기조실장이시구나. 또 옆에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법무부 교정정책단장입니다.

○**송석준 위원** 알겠어요.

○**소위원장 장경태**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국 업무보고받으실 때 하시고요.

교정본부 관련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43번 관련해서 지금 차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결산이 결국 각 구치소별, 교도소별로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취지지요? 그러니까 사업명에서 같은 걸 작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예결산 내역을 본부에서, 사업별·기능별로 정리한 예산 정리 내역은 예산집행 주체인 법무부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지 각 개별 교도소에서 사업 비목별로, 그러니까 사업별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각 검찰청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각 검찰청별로도 검찰청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니, 전체적인 취지가 아니고요.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 결과를 보고받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지적의 취지는 사업별·기능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재배정을 통한 예산 배정과 집행 내역을 다 보고받습니다만 사업별·기능별로 편성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김기표 위원** 따로 자료를 소트(sort)해서 관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각 검찰청이든 구치소별 예산이나 결산 내역을 작성은 하나 국회에서 요구하는 각 항목별 그런 걸로 따로 하지는 않는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프로그램별,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별 이런 항목의 체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그 자료는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각 구치소별로 기준의 예산결산 자료가 있으면?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와 같이 해야만 된다면 저희가 이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만……

○**김기표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내라고 하니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이라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지금 교정시설의 재소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령대가 계속 높

아지고 있어서 그러면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교정 비용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병원 보내려면 호송 비용도 필요한데 그것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고 어떻게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계속 심화될 것이 예정돼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 거지만 예산을 좀 제대로 편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단순히 돈을 잘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교정시설 재소자들의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교정본부장님이랑 같이 마련해서 이 부분을 국감 전까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안 그래도 법무부장관님께서도 지금 과밀수용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계시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용자의 고령화 문제와 병원 진료비의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장경태 소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지적을 해 주신 문제인데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굉장히 실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도 많겠지요. 그런데 심리치료 팀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리치료 업무지침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숫자도 제대로 충원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어서, 숫자는 적은데 상담 실적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담의 질 측면에서 보면 다소 형식적인 면담이나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요, 이분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단순히 이런 차원보다도 이분들이 겪는 심리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교정시설 내에서 또 추가적인 사고가 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교정본부장직무대행이신가요, 지금? 단장님이시지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일단은 97페이지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정청 산하에 구치소의 예산결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은 저는 법무부가 이렇게 예산결산을 해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검찰 심사 과정에서도 놀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 책임성, 행정 투명성 확보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체계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각 교정시설별로 제대로 예산결산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당연히 시정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일선 경찰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다 서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치소마다 혹은 지방교정청마다 결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 심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시정이 필요하다 보고요.

98페이지에 있는, 저희가 결산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화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제출 시한을 놓쳤고요, 제출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결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의적으로 자료 미제출한 게 아니냐는 의

혹이 들 정도로 결산자료 제출을 거부했었습니다. 제출을 거부한 내역들을 제가 구두로 조금 말씀드리면 2016년 현재 판결 이후에 8년 동안 일반회계로 매년 200억씩 사용하셨는데 과밀률 해결됐느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각 구치소별 기관장들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속개할 때 교정본부는 다시 한번 할텐데요 그때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9페이지에 있는 과밀도 그렇습니다. 매년 20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7년 동안 한 1300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밀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서면질의서에, 시정요구한 이후에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단순 자료제출요구에는 제출하지 않으시다가 저희가 사실상의 시정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제출했다는 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전용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밀화, 과밀수용 완화, 수용공간 확충 예산 비목과 노후 수용동 기반시설 개보수 비목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비목도 다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비목을 달리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예산 심사 때 저희가 비목을 굳이 따로 편성할 이유가 없지요. 다 뚽뚱그려서 ‘교정시설 시설개선 비용’ 아래 가지고 현대화를 하시든 노후시설 개선을 하시든 과밀화를 개선하시든 그냥 사실상 건축비로 쓰시는 거지요. 저희가 그렇게 건축비 예산 비목을 편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관리가 아예 안 돼 있었는지, 저도 작년에 교정본부 결산 심사 더 자세하게 살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일단 일차적으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 이·전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43번 교도소별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청을 두고 있는 다른 정부조직과의 비교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재편성과 집행 결과를 보고받고 사업비별 관리는 예산 주체만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법무부에서는 다른 지방청을 두고 있는 출입국본부라든지 법무부도 다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연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저희는 자료 제공은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6건에 대해서 제출이 자연이 되었는데 1일 늦은 것이 3건, 5일 늦은 것이 1건, 7일 늦은 것이 2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업무 담당자의 미비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정시설 이·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예산이 남게 되어서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한 말씀 좀……

○소위원장 장경태 예.

○주진우 위원 차관님, 과밀 수용 문제 관련해서 지금 소년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 소년원 11곳 중에 6곳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정원의 2.5배를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과밀 수용이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있지만 너무 밀접한 거리에서 수용자들이 접촉하다 보니까 특히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교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쁜 영향을 서로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인에 대한 과밀 수용도 문제지만 소년원 부분은 조금 더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여자 정원이 한 30명밖에 안 돼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범죄와 관련해서 연령대가 조금 더 낮춰지는 추세에 있어서 더 대응은 잘 해야 되는데 과밀 수용 부분은 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일단 차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관별 세부 예산 결산 내역 구두로 말씀하시기 전에 타 부처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으시면 다음 회의 때 공유해 주시고요. 다른 소위 위원님들께 타 부처의 결산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셔서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저희가 8개 항목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자료제출, 아마 오늘까지는 안 될 수 있다고 제가 양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시고요. 그래도 어찌 됐건 예산 심사 때까지는 다 당연히 제출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용 내역에 대해서도 어찌 됐건 저는 이·전용 내역에 대해서 세부 내역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이·전용 많이 하자는 않거든요, 교정본부가 그동안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해 왔던 건지. 다른 부처, 다른 기관은 이 정도 규모의 예산에 대한 이·전용이 있으면 징계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십분 양보해서 말씀드리면 교정시설에 근무하신 분들의 처우가,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럴 거면 차라리 비목을 각각 예산을 실질화해서 편성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너무 등한시해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오히려 현실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노후시설 개선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아마 이슈가 과밀화 해소로 집중되고 기재부에서 그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해 주니까, 노후시설 개선은 거의 안 해 주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전용 마음대로 하면 국가재정법 위반이지요. 사실 이것 다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 심사하면서 ‘국가재정법 위반할 수 있지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용 내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라든지 주의 정도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히 소명하시면 제가 마지막 의결할 때 완화해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간략히 한 말씀만 올리면 이·전용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적 내용 중에 공무직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이·전용 한 부분은 저희가 22년도에 퇴직 인원이 233명이었는데 작년에 311명으로 갑자기 증가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퇴직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무리 잘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을 예측하기 힘든 점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장경태** 말씀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지금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며칠 전에 ‘과밀 수용 행위는 수용자인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시정이 되도록 돼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좀 갖고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2032년까지 교도소 그다음에 수용 인원 증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배정과 사업 진행, 실시돼야 될 지역 주민의 반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적기에 적정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지금의 계획으로도 2030년까지 하더라도 과밀 수용 문제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시설을 더 증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본부에서도 다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잖아요, 정체 내지. 그런데 범죄자 수용 인구는 자꾸 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늘었나요, 지난해?

○**법무부차관 이진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밀 수용 문제가 2022년도에는 104%였습니다. 즉, 2018년부터 22년까지는 과밀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104%까지 낮아지다가 2023년, 24년, 25년 현재까지 굉장히 급증하게 되었고요. 그것은 코로나 3년 동안 형 선고 재판이 지연된 부분, 형 집행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23년 이후에 집행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최근에 있어서는 마약 사건, 성범죄 사건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수용 인원이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마약 범죄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용 인원이 지금 현재 5만 4000명 수준인데요 그중에 마약 수용 인원이 약 6000여 명 되고요 성범죄자가 한 9000명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 관련된 자세한 자료 좀 본 의원실에 보내주시고요.

교정본부장님, 지금 수용자들의 어떤 존엄과 가치 이것이 과밀 수용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 수용된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격적인 침해 이런 것 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지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옆그제 월요일 날 여당 법사위원님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때 거기서 일부 영상 자료가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직원들에 의해서 유출된 겁니까? 어떤 다른 경로로 유출된 겁니까?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내부 직원의 행위였다면 이것은 중징계감이지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아무튼 사실 확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만약에 외부인들이 와서 영상을 찍어서 유출했다 이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까?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아마 이게 저희 수사상 한계가 있겠지만 수사에 의뢰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아마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가 원래 면회를 가더라도 보통 영상 찍을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출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핸드폰이나 또는 카메라나 이런 것은 맡기게하고 못 들고 들어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현재 형 집행상에도 전자기기 같은 것은 소장의 허가 없이는 반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당 위원님들이 구치소 출입할 때 그러한 조치도 같이 했습니까?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그건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 결산 심사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이게 결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위원장 장경태 비목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네요.

○송석준 위원 비목, 당연히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시설 운용하고 예산 따지기 전에 기본 운영 자체가 엉터리로 된다면 결산 심사 때 논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킨다면.

그래서 월요일 날 여당 위원님들이 서울구치소 방문할 때 거기서 혹시 모 수용자에 대한 인격침해 행위가 있었다면 결산에서 이런 논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지요.

거기다가 세금, 세비를 받는 의원들이 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인격 모욕적,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탄받아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서 어떤 불법 영상 취득 또는 그것을 외부에 공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계 수사 당국하고 교정본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세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아무튼 유념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차관님, 이것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엄정하게 수사·조사해서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국민들이 납득하게끔 확실히 해 주세요. 차관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약속을 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사실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기획실장님, 차관님 잘 보필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무튼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과밀 수용 완화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결산 집행 보니까요 불용액이 3개년이 다 1000억, 1800억, 1800억 이렇게 넘습니다. 또 심지어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도 1000억 넘고 한번은 300억 넘고 한 번 또 1000억 넘고 이렇게 다 예산 불용액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전용했다는 논리는 별로 성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정본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고요.

혹시 박균택 위원님, 발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박균택 위원 아니요, 검찰국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다음, 검찰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검찰국은 17건의 시정 요구가 있는데요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번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자료제출 등이 미흡하다는 점에 관련해서 2024년 검찰국의 특활비가 7개 사업에 72억 9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됐는데 관련된 상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또 대부분은 비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수준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부당 사용과 관련 자료 등과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하고 그리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의 징계 요구, 사용 내역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제출하라는 장경태 위원의 시정 요구가 있었고요.

60쪽입니다.

24번 특경비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특경비는 정부구매카드하고 수사활동비로 이렇게 실제로 집행되는데 정부구매카드나

수사활동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비공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 내역을 투명 공개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검찰 특경비 유용 의혹과 자료제출 거부 관련해서 변상·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있는데요. 수원고검과 관련돼서 특경비를 회식비로 이용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 거짓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수원고검이 회식비로 예산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98만 원 변상하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전 검찰과장 등이 무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징계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26번 시설장비유지비에 과다한 전용을 지양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데 이런 시설장비유지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한다든지 일반수용비로 조정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시설장비유지비를 다른 비목으로 이·전용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례적으로 많은 이·전용도 주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64쪽으로 가겠습니다.

검사 국외훈련비 관련해서 자료제출 범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검사 유학비는 6만 달러인데 법관 5만, 공무원이 2만 2000달러 대비 과다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자료 공개 범위가 조금 적다, 연구 논문도 전체 공개되지 않는 부분 지적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외훈련비 관련 일체의 자료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김기표 위원의 시정 요구가 있고요.

다른 공무원들과 학자금, 채재비의 형평성을 맞추라, 관련 자료를 좀 더 제출하라는 주진우 위원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66쪽으로 가겠습니다.

검찰 국외훈련비 관련해서 부당 사용자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환수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는데 관련된 주의, 경고 등의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외훈련 관련 논문 제출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 또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찰, 징계 등을 취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67쪽으로 가서 예산 증액 시는 실제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건데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하고 공공수사 관련해서 관련 사업 예산이 실제 소요보다는 너무 과다 증액돼서 이·전용 등이 크게 발생하여서 통신 자료 제공 이런 부분의 경우에 실제 집행액이 낮았다. 그리고 포상금 예산도 당초 예산 계상 대비 집행률이 8%로 떨어졌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69쪽으로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권보호 등 검찰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공사비나 자산취득비 등의 항목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하고 이런 잔액을 다른 항목으로 과다하게 전용한 문제, 공사비를 공공요금으로 전용한다든지 형사보상금 부족 부분으로 전용 집행한 비율이 높은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라는 게 있고요.

70쪽 31번 일반수용비를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하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목적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편성됐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실적이 부진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요.

73쪽으로 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납부 비용 등이 항상 부족해서 과다 전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기·가스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항목의 경비를 과다 전용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75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약 수사 등의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됐는데 그에 비해서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 등에 대해서 실제 집행한 부분은 조금 저조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계를 정확히 해서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77쪽으로 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내역사업이 연례적으로 실적이 부진하다,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교육 등이 8.5% 집행률 등으로 너무 부진해서 이런 부분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79쪽입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한 상고 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최근 2년간 상고 포기 의견 등 심의 결과를 준수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전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보상금 규모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전용을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고요.

84쪽입니다.

검찰청 인건비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편성돼서 남은 잔액을 이·전용 등으로 하거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일선 검찰청 검사 인력이 부족함에도 대검찰청 등에 장기 근무하거나 외부기관 파견 인력이 조금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경력 검사 채용을 확대한다든지 일선 현장에 검사 투입이 가능하도록 대검 근무 인력을 조금 조정할 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39번 검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실적이 부진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요.

실무수습 변호사들이 검찰청이나 법무부에 오는 인원이 조금 채용계획보다는 당초, 예를 들면 법무부의 경우에는 86명을 계획했습니다만 62명이었고 검찰청도 35명을 계획하였는데 실제로는 19명이 와서 검찰청이나 법무부가 인기 없는 부서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실무수습 변호사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23번 특수활동비 자료제출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수사경비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산심의 전까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공개 대상으로 정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 심의권을 존중해서 비목의 본질인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도 제출하였고 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활비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충실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과 달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24번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관련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지적 제외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의 전까지 판례에서 공개 대상으로 정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국회의 결산 심의권 등을 존중해서 집행 장소의 상호, 업종 정보, 집행 시각, 부당집행 자체 환수 사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과 달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25번 수원고검의 특정업무경비 부적정 사용 건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요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의로 좀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시 현장에서 수사 현황과 수사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집행 인원의 규모, 개인 사비도 지출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예산지침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련 담당자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25년 5월 내부결산 및 사무감사 종료 후에 요구 취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제출 여부와 범위를 대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적절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므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26번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27번 검사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재검토 관련해서 먼저 학자금 지급기준을 검토해서 형평을 맞추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사무만 담당하는 법관과 달리 검사는 형사업무 외에도 국제 투자분쟁 등 정부 내 법률전문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국제법률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필요성이 큰 상태입니다. 지적 취지에 따라 학위 과정에 기본 학자금을 종전 6만 달러에서 법원과 동일하게 5만 달러로 하향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국제법률 전문역량 함양을 전제로만 추가 학자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이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 8월 달에 국외훈련비 환수 대상자와 지급된 훈련비 및 환수액, 논문 유사도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저희가 법무부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했던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이 부분 시정요구 철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번 국외훈련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조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2년 12월 언론 보도 이후에 환수시효가 남아 있는 연구논문 336건을 전수조사해서 16건의 연구논문에 대해서 표절로 판단하였습니다. 환수 대상자들의 국외훈련 당시에는 명시적인 환수 근거가 없었지만 23년 6월에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국외훈련비 환수 근거를 마련해서 전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조치 등의 결과로 인해서 논문 유사도가 23년 11%에서 25년 4.8% 등으로 개선된 바 있고 논문심사 관련해서도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표절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위법·부당을 바로잡기 위해서 환수조치 등 지속적인 자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시정요구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29번 항목부터 35번 항목까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36번 형사보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형사보상금의 지급 원인이 상당수는 재심사 건이고 재심사 건에는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사건 등 과거사 사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보상금 중에 과거사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8.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거사 사건의 경우에 당사자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 시기와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간 소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무죄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금 관련해서도 검사 과오 비율이 저희가 산정한 기준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적정 예산 편성 및 공소권 행사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7번 검찰청 인건비 예산 편성의 정확성 관련해서 인건비는 재정 당국이 전년도 집행 액과 정원, 보수 인상을 등을 고려해서 전 부처 공통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작년 24년의 경우에 검찰 구성원의 휴직 인원 발생과 퇴직 인원 발생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 인건비가 발생했지만 이 부분도 매년 퇴직·휴직 인원이 변동됨에 따라서 인건비 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이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요구 철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38번 일선 검찰청 검사 인력 부족 관련해서는 지적 제외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적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에서도 공감은 하고요. 25년 이번 하반기 검사 인사 시에 검사가 파견 중인 기관별로 파견 필요성을 재점검해서 외부기관 파견보직을 35석 중에 총 7석을 축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검찰청 인력 충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인건비 예산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당한 예산 집행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요구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9번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법무부차관의 의견에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소명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차관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검찰국장이신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검찰국장입니다.

○**송석준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성상현입니다.

○**송석준 위원** 언제 보임됐어요, 그 자리로?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7월 4일자……

○**송석준 위원** 7월 4일자로?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송석준 위원** 직전 보직은 뭐예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대전지검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요.

차관님, 특검에 관해서는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지요, 3특검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에 관여를……

○**송석준 위원** 3특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와 수사관 파견 등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예산 지원도 하지 않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산 부분은 특검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절차상 법무부를 통해서 예산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실무적으로 누가 담당고 있나요, 어느 과에서?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검찰과에서 담당합니다.

○**송석준 위원** 검찰과에서?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금년도 법무부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빡빡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어떤 파트에 대한 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석준 위원** 모든 법무부의, 아까 교정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예산이 빽빽한데 그게 부족한 상황이고 또 다른 일반수사, 기존의 법무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재원이 부족해서 검찰 수사활동 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아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위원님, 혹시 특검 관련 예산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특검 예산은 저희 법무부……

○**송석준 위원** 제가 일반적인 것 말씀드리잖아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무부와 검찰국의 정상적인 일반수사, 법무부의 활동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검 발족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개정안에서 기간도 연장하고 또 특검 과정 검사라든가 직원들 숫자를 대거 늘렸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님이 답변할래요, 검찰국장님 하실래요,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특검이 출범이 되면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게 정상적이에요? 법무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얘기를 해서 무조건 시키면 따라서 하는 그런 업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는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송석준 위원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위헌성 소지가 많고 부적정하다라는 당당한 입장을 내서 정치권에서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를 들면 법무부가 특검 활동이 정상적이었을 때는 당연히 지원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를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지금 검찰의 기본 조직도 아직 남아 있고 소위 검찰개혁인지 검찰 해체인지 검찰 죽이기인지 뭔지 앞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기존 법률 범위 내에서, 기존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민생을 쟁기기 위한 여러 가지 수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검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재원도, 세수도 줄고 국가재원이 부족해서 있는 사업들도 다 줄여 가야 될 판국에 특검을 위해서 규모도 대거 늘리고 또 특검 활동 기간도 대거 늘려서 지금 막대한 예산, 수백억 예산이 더 들게 생겼잖아요. 그 금액 차관님, 파악하고 계세요, 특검 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 소요액?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법무부에서 추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특검 측에서 요구가 오면 법무부는 그냥 ‘예스’하고 무조건 통과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무부가 공식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장경태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것은 특검 법률에 따라서 기재부 등 예산 편성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무부는 전혀 관여를 못 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송석준 위원 사실상 법무부를 거쳐서 이게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돼 있잖아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위원님, 그것은 특검이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실제 집행은 법

무부를 거쳐 가기는 합니다만 저희 법무부가 관여하는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이고 수사활동을 위해서 그동안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모든 것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한 곳이 법무부잖아요. 특검들 중에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 검찰 활동에, 수사활동에 부족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일부 지원해서 구성이 되고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법무부가 컨트롤해 줘야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 비용이라든가 또 수사 인력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높은 법무부 또 검찰국에서 의견을 줘서 이건 과도하다, 이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다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실무 협의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특검의 수사활동에 대해서 적정성 관련 문제점 또 예산 낭비의 가능성 또 기존 검찰과의 관계, 어차피 이것은 법무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잖아요.

○**소위원장 장경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도 제대로 안 내요, 물론 특검에서 우리가 요구한 거지만. 특검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서도 특검 기간 연장이라든가 인력 대거 증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존의 검찰조직과 수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의견도 좀 내고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 줘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법무부에 요구한 이것은 어차피 객관적인 데이터, 숫자가 나올 테니까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해 주세요, 특검 관련해서.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위원님, 특검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편성하고 편성과 집행에 법무부가 직접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쨌든 특검 예산도 기재부의 부 예산이 아니라 법무부 예산의 일부로 편성이 되지 않아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비비 중에서 편성……

○**송석준 위원** 예비비든 뭐든, 그러면 법무부하고는 전혀 협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나요, 특검 조직에 관해서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집행에 관련해서 법무부가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특검은 독립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러한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 관여한다면 그것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송석준 위원** 내용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지요. 수사 상황을 지휘하거나 관여해서 그럴 수 없지만……

○**소위원장 장경태**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처음에 조직 운영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은 법무부가 관여를 하지요. 일선에 의하면 파견 나간 검사들이나 직원들이 지금 기존 법무부의 예산, 업무카드를 쓴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일부.

○소위원장 장경태 송석준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부 조사를 해서 특검 예산이 아닌 법무부의 일반 예산을 갖다가 파견 나간 직원들이 사용하고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내년 국감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 실태 상황을 본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일단 송석준 위원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아마 답변하실 때 더 용이할 것 같고요.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하시기보다는 예결특위 가셔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결특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서 법무부에 더 상세하게 이것을 따져 줘야 됩니다. 예결특위 가 봤자……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국민의힘에서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 가셔서 소소위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능력 있으신데 왜 여기서 얘기하세요?

○송석준 위원 이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검증도 해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차관님 고생 많으시니까 검찰국장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검찰국장 되니까 힘 있는 자리에 갔다고 축하해 주는 분들 많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축하해 주시는 분……

○박균택 위원 현실이 그런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글에도 한번 썼습니다마는 뜻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검찰국장이라 굉장히 불행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잘한 것들은 이룬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했던 것 세 가지,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마음대로 안 돼서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 방안을 특별수사 기능을 줄이고 형사부 기능을 유지하는 것, 검찰의 칼을 빼앗고 펜대를 쥐어 줘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지휘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올바른 검찰의 개혁 방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특수를 살려 두고 형사부의 지휘 기능을 빼내는 이런 반대로 가는 개혁이 되는 바람에 오늘날 지금 현재의 검찰청이 폐지되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정부의 뜻과 맞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했던 것이 아쉽고.

두 번째가 검찰 인사를 형사부 중심, 형사부 검사 우대하는 인사를 하려고 했고 상당 부분 이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특수부서를 중심으로 적폐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뜻대로 특수부 중심 그다음에 측근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형사부 중심의 인사 목표가 반 이상 깎여 버렸던 그런 상

황을 맞이해야 했고 이것도 검찰이 사조직화가 되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하고 오늘날의 내란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았던 것, 이것 참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수활동비 시비가 그 당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편성을 좀 줄이되 오히려 형사부 검사들을 위한 민생수사 수당 이것을 만들자. 특활비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지요. 윤석열 검사를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편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활비를 많이 준다든가 또 일선에서 집행을 할 때 명절 격려금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또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를 위해서 주로 많이 쓰인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야근을 무지 많이 하는 검사들, 수사관들을 위한 격려금 이것으로도 쓰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공개를 해도 될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동안에 많이 개선되어 왔고 또 공개를 해도 될 만큼의 장점도 있었을 텐데 일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박균택 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형사부 민생수사 수당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검사들이 5급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근 수당을 못 받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야근은 누구보다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박균택 위원 이제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부 검사를 중심으로 또 앞으로 중시해야 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 중심으로 야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좀 하는 차원에서 민생수사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 대신에 이것으로 좀 대체하자는 차원으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설의 동의도 받았었고 인사처의 동의도 받았었고 민정수석실의 비공식 동의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일선으로 떠나고 또 다시 특수 중심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아가면서 이 제도가 잊혀져 버린 것이 됐습니다.

뒤에 증인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뒷자리에 있는 증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논의했던 자료들 혹시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특수활동비가 편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한다면 정말 고생하는 사람, 서민들의 권리·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야근하는 사람에게 뭔가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작게나마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제도 연구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박균택 위원님 나름 정의로운 검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차관님, 일단 특활비 부분은 조금 더 소명하실 수 있는 부분은 소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장경태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체 수사비 한 126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형사부 수사지원,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마약수사까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활비·특경비 삭감할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마약수사 제대로 못 한다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집행률 보면 높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는 제발 부디 예결특위 예산소위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정말 완강하게 거부했었는데, 또 저희 법사위 연수도 있고 해서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검찰청운영인건비 개선 부분은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연수 관련, 그러니까 저는 연수 출장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지 가셔서 열심히 연수하시는 분들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 하자는 않았는데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한 자료제출 한번 점검하시고, 저의 인식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사비에 대한 부분도 만약, 예전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검찰 같은 경우도 대부분 특경비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대부분 특경비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크다든지 국내여비 비용이 더 큰데 다 특경비로 몰아넣으니까…… 특활비나 특경비, 아마 쓰기 편하게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아서 특경비·특활비 줄여 버리니까 업추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 현실화하는 게, 실질화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미리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적 사항들에 대한 답변과 보완을 좀 더 추가하셔서 저희가 오후에 속개할 때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번 결산 심사는 대부분의 지적 사항들이 교정본부와 검찰국에 집중되는 것은…… 검찰국은 원래 그런데 교정본부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셔서 보고받으시고 속개할 때 다시 한번 하고요.

저희가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잠깐 정회하고 바로 감사원 결산 보고를 받고, 오전에 감사원 보고를 좀 받아 놔야 오후에 실질적인 결산 심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하고 35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황해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별로 전체 일괄하여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감사원은 지금 총 16건의 사안에 대해 23건의 시정요구가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성과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국민 신뢰도 제고에 관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추가 개발 방안과 경제적 성과로 환원이 어려운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대체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 취지에 맞게 감사활동 성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박군택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감사원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그리고 2024회계연도에 임차보증금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계상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 경우 임차보증금은 재무제표상에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장경태 위원님으로부터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상용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용임금을 감액해 일용임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방식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상용임금 편성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국가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상용임금을 일용임금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지양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장경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수결손 결산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2022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초과세수 문제를 검토하고 기재부에 주의 등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도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결산심사 시 세수부족에 대한 검토와 국회 보고를 시정요구로 의결했음에도 감사원이 2024년 결산검사 시에 관계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요구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이 최근 2년간 발생한 세수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025년에 과도한 세수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검사하고 관련 부처에 대한 시정요구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가 김기표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박군택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최근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의 세부집행 내역과 여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여비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하라는 시정요구가 장경태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경비 중 홍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감사 실시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최근 4년간 30일 이내 결정한 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또 감사 실시가 결정된 사항 중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한 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감사청구 관련 홍보비를 증액해서 집행했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으로부터 국민감사청구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주진우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경비 중 일반연구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책연구 결과만을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일반연구비 과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경쟁입찰 가능 용역을 확인한 후 확대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일반연구비를 통한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태 위원님과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원은 일반연구비로 수행한 과제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계약 시 수의계약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경비 중 재심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재심의 중 법정기한인 2개월 내에 처리된 비율이 10% 내외에 불과하고 2023회계연도에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인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위 신속처리 제도는 시정요구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표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사건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경비 중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 감사원은 향후 전용 최소화 및 실제 수요

에 따른 예산 편성·운용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2024년에도 국내여비에서 다른 비목이나 세부사업으로 전용, 세목, 내역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태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원은 국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규모를 재산정하여 실소요에 맞게 감액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고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국내여비 예산의 연례적인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사업 중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확대하면서 하반기 여비 부족 예상에 따라 내역변경을 통해 증액하였지만 이후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여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내역변경 및 불용을 최소화하라는 요구가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제도개선 요구, 박균택 위원님으로부터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에 사전컨설팅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전컨설팅은 규정상 처리 기한이 30일 이내이지만 2024년 기한 내 처리율이 33% 정도이고 60일 이상 장기 처리 건수의 비율도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사전컨설팅의 적시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절차간소화 등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지원 사업 중 발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3건의 발간계약이 모두 10월 이후에 체결되어 그중 1건은 계약액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총 7건의 발간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원은 사고이월 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 관련 발간 사업 추진 일정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수의계약 의존도를 낮추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중 바닥 마감재 철거 후 재설치 공사의 경우 집행되지 않은 공사비 금액 중 4억 4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태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으로부터 시설공사 등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정확히 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전용 등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이 중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이 당초 2024년 12월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과기부의 대기업 참여제외 예외 인정이나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 금액이 이월되고 준공 예정일 또한 올해 5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원은 다년도 사업의 추진 일정

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정 자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월된 후속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입니다.

감사원장 등 5인은 2024년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G20 감사원장회의 등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경비로 총 84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감사원의 2024년 예산요구안에 포함되었지만 기재부의 편성 과정에서 제외되었고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감사원은 동 사업비 집행으로 인해 당초에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사업에서 8월 말 7000만 원을 전용하여 아시아 감사원장회의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나 전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하여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장경태 위원님으로부터 국가재정법을 위배한 예산집행에 관여한 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요구,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이러한 예산집행 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 요구, 박군택 위원님과 송석준 위원님으로부터 국가재정법 및 예산편성 취지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주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때 감사원에 대하여 2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고 감사원은 2025년 8월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모두 조치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예비 집행 또 수의계약 부분에서 조치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박군택 위원님으로부터 있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재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지적해 주신 사항 총 16건 중 15번 사항을 제외한 15건에 대해서는 지적 내용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예산집행이나 관련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5번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15번 사항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지적 취지를 공감합니다. 다만 조치에 있어서 주의 또는 시정은 수용하겠습니다만 징계는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유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2024년 SAI20 감사원장회의는 저희가 국제협력 차원에서 그 당시 회의에서 공동 성명서 채택 등 반드시 감사원장 참석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이로 인한 다른 국외여비 사업을 위한 전용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전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계는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일단 감사원의 특활비, 특경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작년에 제출 안 해 주셨던 택시비 사용에 대해 도착지까지 포함해서 작년의 요구 자료 수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구두로 말씀드립니다. 요구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OASYS 시스템 구축 사업 이것도 150억을 원안 유지해서 통과시켜 드렸었는데 불용이 발생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외출장과 관련돼서 사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G20 감사원장회의는 기재부가 반려한 사업입니다, 반려한 사업. 그러니까 아시아 감사원장회의는 기재부가 가라고 했던 거고, 가지 말라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전용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비목이 없는 예산을 감사원에서 자체 편성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감사원장회의비가 부족하면…… 이것은 국외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여비를 또 이·전용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위법,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계 요구하면 감사원 사업과장이 정계받는 거지요, 현재는? 정계 대상자가 과장 아닙니까, 이·전용으로 인한 대상은?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정계 대상은 그 해당 실무담당자가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계 요구하면 보통 과장님이 받는 거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종합적인 실무적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정계 절차가 들어가면 과장님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과장님이 위에서 시키니까 했겠지, 과장님은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받더라도…… 저는 실장님도 좀 억울할 수 있다고 봐요. 사무총장님이 지시하시니까 했겠지, 실장님이 감사원장을 등 떠밀면서 G20에 보냈겠습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위원장님,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장경태 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 일괄적으로 지적한 특활비, 특경비 제출과 관련돼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업추비, 기본경비 20% 일괄 삭감했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또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전용이 많으면. 국내 여비 이렇게 마음대로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OASYS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강화, 여기 두 가지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특활비, 특경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있어서 기각을 했고,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할 자료를 현재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류가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아직 조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국회에서 위원님들도 좀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택시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사업, 15번 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SAI20 회의는 G20 국가 감사원장들의 회의인데 2022년에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다가 처음 제출했던 게 2024년도 예산입니다. 아마 기재부에서는—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처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면 편성하기가 좋을 텐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규모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는지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첫 연도 신청했다가 안 된 해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2024년 예산입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 올해부터는 반영을 해 주겠다 해서 2025년 예산에는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것을 국외여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준에 편성돼 있던 국외여비 예산이 좀 모자라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부득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 전용 과정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심의회라고 있는데 심의 안전으로도 검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 절차들은 거쳐서 해서 저희가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규정을 위반한 여부는 실장님의 판단하실 것은 아니고요. 일단 특활비·특경비 부분은 검찰도 감사원보다 더 많이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할 시간과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준비하고……

○**소위원장 장경태** 검찰 특활비 80억, 특경비 507억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완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감사원은 특활비 15억, 특경비 45억 규모인데 그것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감사원은 그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G20 감사원장회의 가셨던 것, SAI2025 가셨던 것 국외출장 계획서·보고서는 왜 제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25년도에 기재부에서 반영돼서 갔다 오셨다고 하면 계획서하고 보고서는 왜 제출 안 하세요? 국외출장 계획서가 있을 거고 다녀 오셨으면 어떤 감사원장을 만나서, 누구누구 만나고…… 국외출장 보고서 당연히 제출해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다 제출합니다. 왜 안 하셨어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결과보고서는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제가 보고받은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지적 사항 얘기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할 시간이 없네.

○**소위원장 장경태** 제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하시고 말씀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특활비, 특경비, 업무추진비 그 원고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언제 제출이 되고 국회에는 언제 제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 원고가 판결 이후에 또 추가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까지 하면 양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9월 중에 되는 대로 일부라도, 다는 안 되더라도 기간이 많으니까요.

○김기표 위원 왜 검찰이나 다른 데서는 양이 훨씬 많은데 불구하고 해 오는데 감사원이 그것을 단기간에 못 합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최대한 언제까지 서두를 거예요? 바로 제출을 하십시오. 그것 안 되면 직원 몇 명 붙어서 하면 될 걸, 국회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출 안 합니까? 그것은 안 하겠다는 태도지……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기표 위원 아니, 그렇게 보이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다른 데서는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소위원장 장경태 검찰도 수천 페이지 다 제출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원만 그런 거예요. 감사원장이 바뀌어야지 제출하실 거예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김기표 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제출할 수 있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오늘은……

○김기표 위원 오늘은 안 되면 내일까지는 됩니까? 시간을 언제까지 줘야 돼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

○김기표 위원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합리적인 시간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한 9월 20일까지는 확실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일단 답변 들었고, 위원장님……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9월 20일까지 안 내면 국정감사 들어갈 때 저희가 바로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아무튼 9월 20일, 만약에 조금 늦어도 1~2일 정도는 저희가 여지를 줄 수 있는데 국감 전에는 꼭 제출을……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국감 전에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9월 20일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20일까지 제출하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자료 검토를 하니까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황해식 실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참 못 볼꼴 볼꼴 다 보면서 참 영욕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작년에 감사원장님 탄핵당했을 때 많이 힘드셨지요? 얼마 동안 업무 공백이 있으셨던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원장님께서 탄핵 소추가 되고 99일 만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거의 100일 간의 업무 공백이, 문제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원장님인데 그 당시 같은 당의 의원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직무 정지됐던 것은 정말 심각한 헌법기관의 업무 공백 상황이었는데, 아마 직원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때 업무, 예산 집행, 그 100일간…… 물론 금년 들어와서도 일부 겹쳐 있지만 연말에 그 예산 집행에 차질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중요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거나 탄핵 가결되고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에 감사원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에 위축이 와서 사업 집행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 혹시 그것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예산 집행 측면에서는, 저희 원장님 직무 집행 정지로 인해서 예산 집행 측면에서는 특별한 차질은 없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는 안 따져 봤지요? 그 기간 동안의 사업 집행 상황, 이렇게 지장을 받았던 사업들, 집행에 문제가 됐던 것 한번 파악해서 본 의원실에 좀 알려 주세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송석준 위원** 그것 좀 주시고.

G20 감사원장회의가 언제 있었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2024년 6월에 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작년 6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때 경비가 부족했나요? 왜 감사활동경비를 또 전용을 해서 7000만 원이나 지출을 했나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감사활동경비에서 지출한 것은 아니고요. 통상 국제회의 예산은 국외업무여비로 편성을 하는데 당시에 그 사업이 국외업무여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로 편성된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감사활동경비를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아닙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송석준 위원** 같은 비목으로 다른 사업 비용을 이쪽으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 전용은 아니고……

○**송석준 위원** 전용이 아니고 자체……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기준에 있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성과는 많이 있으셨어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G20, SAI20 회의는 왜 중요하냐 하면 주로 선진국 감사원장들이 오는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전체적인 회의도 하지만 또 여러 감사원장들과 양자 회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도 있고 서로 협력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원장들끼리 그런 자리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MOU도 몇 건을 맺고 저희는 성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매년 개최되나요? 몇 년마다 개최되나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매년 개최되는 회의고 2024년에는 정식 출범식을 한……
○송석준 위원 첫 해인가요, 출범식 첫 해?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회의가 처음 개최된 것은 2022년도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 감사원장께서 가시지를 않고 선임 감사원장이—지금 퇴임하셨습니다마는—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올해도 또 다른 감사위원이 참석을 하셨고 이렇게 매년 개최되는 회의……

○송석준 위원 그러면 올해도 개최돼서 참석했어요? 올해는 내역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됐나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올해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 국외출장 보고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되었건 지금 여기 예산 집행 현황 보니까 항공 운임만 6400만 원, 일곱 분 다녀오셨는데……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5명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5명이 통역관까지 해서 다섯 분이신가요, 통역 실무인력 포함해서? 여기 국제협력담당관실 실무인력 통역, 맞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다 해서 5명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저희 원장님께서 일등석을 한 번도 안 타셨고 계속 비즈니스만 타셨는데, 그때도 비즈니스하고 일반석을 섞어서 타셨고……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무튼 이 회의 참석, 전체 8400만 원 중에 항공 운임만 64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를 좀 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려면 결산심사소위를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부터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미비된 자료를 다시 추가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 심사에서는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제처, 공수처, 현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에 앞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2024년 대법원 소관 결산 관련 총괄 내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안은 21건이고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이 중 대법원의 의견이 있는 안건 사항은 일반회계 3건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6페이지, 일반 인건비 관련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업들로부터 인건비로 과다하게 예산을 이·전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표·박균택·서영교·장경태 위원님께서 대법원은 인력 운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향후 정확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안은 김기표·박균택·서영교 위원님은 주의, 장경태 위원님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관련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용도에 위반하여 직원 위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 4개 사업에서 총 1억 4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표·박균택·서영교·이성윤·장경태·주진우 위원님께서 대법원은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 주의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예산 집행 담당자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고 복리후생비가 기재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안은 김기표·서영교·장경태·주진우 위원님은 시정, 박균택 위원님은 주의, 이성윤 위원님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징계부가금 관련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크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 등 징계부가금 징수·체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표·서영교 위원님께서 대법원은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징수 및 체납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안은 김기표 위원님은 주의, 서영교 위원님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심사자료 40페이지, 부대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께서 ‘대법원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집행지침에 위반하여 복리후생비를 집행한 것에 대한 주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경위를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입니다.

우선 인건비의 과다한 이·전용 주의와 관련하여 심사자료 2번, 6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과다한 예산의 이·전용 및 승인 이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년 대비 인건비가 8.1% 증액되어서 이·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대법원은 인력 운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정확한 인건비를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시정요구 단계를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리후생비 집행지침 위반으로 심사자료 3번, 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주의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반하였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지적사항 및 기재부 집행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 및 기타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예산집행지침 준수 및 집행 유의사항 안내 등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2025년 8월 28일 자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복리후생비 집행 시에 세미나, 워크숍, 체육행사 내역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함으로써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가장 무거운 시정 의견을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징수 등 대책 마련으로 심사자료 4번, 10페이지입니다.

징계부가금의 미수납이 크고 불납결손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 등 징계부가금의 징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자의 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징수 결정된 금액이 미수납되고 있습니다만 전국 법원의 징계부가금 채권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징계부가금 징수 절차 및 소멸시효 중단·정지 등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수납률 제고를 위하여 미수납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관할 세무서에 징수 요청을 의뢰하는 등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단계를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용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전용을, 전체적으로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해야겠지만 금액이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요.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굳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예산으로 저희가 통제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전용을 막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장님, 어쨌든 제도개선 정도 사안으로 했으면 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초과근무 수당 편성에 관련된 문제였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재판 사업을, 재판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시간 외 근무가 증가했는데 오히려 초과근무 수당은 계속 감소 현상이 나타나서 인건비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용이 발생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이 반영해 주셔서 초과근무 수당의 편성이 충분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복리후생비는 시정 요구를 수용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은 안 드

리겠습니다만 사실 연속 조금 주의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작년에 심사 때 지적된 사항들은 아무래도 안 하시려고 노력할 텐데 이 부분은 하실 수 있는, 다 지출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전용까지 하셨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나머지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부대의견 동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처럼 저희가 한 번 주의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정 의견 수용하고 부대의견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마지막으로 결손 처리에 대해서 10억 5000 정도 미수납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정수 및 체납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이유가 혹시 어떻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이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람이 퇴직 공무원이긴 한데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복역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관련 사업있지요? 여기에 교육경비를 특히 카이스트의 석사 과정에 900만 원 퇴직자 그리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3900만 원 퇴직자 이거에 대한 교육비를 환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송석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왜 그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심사자료 몇 쪽 부분인지 다시 한번 지적을……

○송석준 위원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예산 자료들이 아주 그냥 간편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본 의원실에서 아마 지적한 내용이 행정처에 제출이 됐을 텐데요.

○소위원장 장경태 송석준 위원님이 아마 질의서는 서면질의에 넣으셨는데 지적사항 시정 요구는 안 하셔서 이 소위 자리에는 빠진 것으로……

○송석준 위원 자료에서는 빠졌어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시정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서면질의는 하셨는데 그냥 의원실에서 답변받고 아마 정리가 되신 것 같거든요. 납득을 하신 줄 알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 양해해 주시면 기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기조실장입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제도개선 이전에는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원 수강한 이후에 몇 년 이내에는 퇴직하지 않아야 되는데 퇴직했을 경우에 해당 돈을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인사실과 미리 협의되지 않아 가지고 환수 조치가 되기 전에 퇴직해 버린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는 저희들이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그런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환수를 다하고 퇴직하는 걸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도를 개선했고 과거에 대해서는 그런 불문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계속해서 환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퇴직이 됐기 때문에 약간 곤란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어느 규정의, 내부 규정입니까?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영 규정에 있는 각 기관, 국가기관 공통 규정 아닙니까? 그거를 대법원 내부규정에 반영을 못 했다는 거 아닌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시정하고.

○**송석준 위원**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규정을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은 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게 아마 기획재정부의 이런 교육경비, 각 국가기관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처리 규정, 관련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게 대법원만의 규정이 아니고 정부 모든 기관에 대한 공통 규정일 텐데 대법원의 행정처에서 이런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규정, 입법 미비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실무자인 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 조국제** 안녕하십니까? 조국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관련해서 인사실과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퇴직하기 이전에 봉급에서 바로 징수하는 걸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과거에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다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두 분 지금 남았습니다. 계속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끝났고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시적으로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 조국제**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쩌면 규정 미비였지요, 내부?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 조국제**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그거는 바로잡았다 이거지요?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 조국제**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잡았고 과거에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 중이고.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 조국제**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2명만 남았다?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 조국제** 예, 두 분만 남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 결과를 본 의원실에 좀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방에서 무슨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요구 안 했는지 모르지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요구 안 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렇게 고쳤다고 하시니까 주의 측구를 하도록 이렇게 좀……

○**소위원장 장경태** 주의로 하신다고요?

○**송석준 위원** 제도개선은 이미 한 거네. 그렇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그렇지요.

○**송석준 위원** 제도개선 이거로 가라고 하면 되겠네.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제도개선 별건으로……

○**김기표 위원** 제도개선 이미 했으면은 그냥……

○**송석준 위원** 행정실장님,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일단은 질의와 검토보고서까지 내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정 요구는 안 하셨는데 어찌 됐건 송석준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시고 또 법원에서 제도개선을 수용하실 수 있으시면 제가 시정 요구를 추가해서 제도개선으로 담으면 어떨까요? 송석준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시정 요구하셨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쪽으로, 주의는 하셨다니까 주의 조치까지 하시기는 조금…… 아니, 하셨다고, 안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주의를 주실 수 있는데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또 이미 조치를 하셨다고 하셔서……

○**송석준 위원** 재발 방지에 대한 주의 조치를……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시정 요구에 대한 제도개선 사안으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은 대법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법무부인가요? 그런 곳도 있어서 아무튼 자기 조직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수나 이런 게 좀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좀 느낌이 뭐랄까요?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도개선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했다고 하니까요.

6페이지에 보면 과다한 인건비 이·전용 이건 지금 초과근무 수당이 많이 늘어서 다른 데서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건 제가 이해할 만해서 저는 제도개선으로 낫춰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 그게 궁금해서 이거는 질의를 하는데 복리후생비 전용한 문제 있잖아요? 2023년에 지적이 되고 그런데 의견상 볼 때 체육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이면, 물론 다 필요한 행사고 워크숍도 다 하는데 아무래도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에도 많이 포함,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데 의견상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2023년에 지적받고도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전국 법원에 그런 어떤 조치들이 안 내려갔나요? 아니면 알고도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 부분은 24년 8월 9일에 법사위 지적 사항 관련해서 안내 메일을 전국적으로 재무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관련 예산이 28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국회에서 결산 지적하신 거에 따라서. 그리고 올해도 정부안으로는 한 5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생기게 된 이유는 재무담당자들이 원래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있다가 오는데 재무담당 업무가

고되고 또 전문성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재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직위로 부여를 하고 또 기간도 늘리는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일단 8월 달에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매일로 해서 시정됐다면 그거는 시정하는 과정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7월까지 쓴 금액이 이렇다, 그거는 또 이해할 만한데 혹시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법원에서는 그 부분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앞으로 재발이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챙겨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하나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정 요구에 대해서 기관 의견이 있는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관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고요.

2번 인건비 과다한 이·전용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치하고 법원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복리후생비는 시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4번의 징계부가금 체계적인 수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송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까지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또 추가…… 지금 다 정리는 된 거지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회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지금까지 대법원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1건, 주의 9건, 제도개선 12건 등 모두 2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부대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형원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정부 측 의견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법제처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12건의 시정요구안이 있고 그중 2건은 주의 요구, 10건은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법제처는 12건의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2건의 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영교 위원, 장경태 위원님께서 법제처는 2024년 법령정보제공,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령심사지원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들에서 상용임금, 일용임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인건비 사업의 보수로 915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향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로의 이전용을 금지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시정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경태 위원님께서 법제처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타직보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보수 중 4700만 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유사한 사유로 인한 기타직보수의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인사충원 등 인사계획을 면밀히 세워 기타직보수의 이전용을 지양하도록 시정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요구 수준은 주의입니다.

나머지 10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소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위원님들께서 주신 12건의 시정요구안 전부를 수용하고 법제처 업무 개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혹시?

○**송석준 위원** 여기 잠깐.

○**소위원장 장경태**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법령심사지원 예산 관련입니다. 정부 부처의 법률입법지원 건수가 과거 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것 왜 이런 거예요? 거의 22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 해 입법지원 건수가 무려 30% 이상 대폭 줄어들었던 말이지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입법지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송석준 위원** 법률입법지원 건수가 크게 감소했어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혹시 건수 자체가 줄어든 걸 지적하신 건지 아니면.....

○**송석준 위원**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그러면 관련된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건당 예를 들면 법률 내용에 따라 다 다른가요? 소요 예산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고 자문료가 한 몇백만 원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 따라 사업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난해 2024년?

○**법제처차장 김창범** 작년에 예산액은 1500만 원 정도 자문비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자문비가 1500만 원인데 지금 집행률이……

○**법제처차장 김창범** 집행액은 1500만 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법률지원 건수는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법제처기획조정관 최영찬** 기획조정관입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입법지원 건수가 준 게 아니고, 입법지원 건수는 안 줄었는데 지원한 내용을 가지고 입법예고에 반영되는 건수가 준 게, 통계 현황은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입법예고, 그러니까 입법지원은 많이 했는데 예고까지 이르지 않은?

○**법제처기획조정관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 입법 수요가 있어서 검토하고 지원하고 하다 보니 이것은 전반적인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져서 결국 입법예고까지 이르지 않은, 그렇지만 중간에 지원하고 같이 검토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이거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그것은 줄지 않았습니다.

○**법제처기획조정관 최영찬** 그런 경우도 있고 의원발의 법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예고 건수는 좀 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내부적으로 추진하다가 정부 입법으로 입법예고가 안 되고 의원 입법으로 넘어간다든가, 그렇지만 그전에 법제처가 관여해서 입법 지원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이거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송석준 위원** 그러면 보좌진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런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입법예고 부분이 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일을, 제가 보니까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와중에 정부도 국회와의 소통이 요새 굉장히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단도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석준 위원** 국회 보좌진들이나 국회사무처 관계자들하고 행정부가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서, 일한 것은 일한 것을 제대로 소명해서 이렇게 지적받는 일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주의 2건, 제도개선 10건으로 모두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범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부 측 의견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공수처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전체 6건이었다는 것 알려 드리고,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미진해서 그리고 예산 편성에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불용률이 11.6%로 다른 국가기관 전체 예산의 평균 불용률 2%에 비해서 공수처 불용률이 좀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전용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수행한 점이 있는데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하면서 국내 여비를 전용해서 추진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계획에 없는 사업을 타 사업 예산을 갖다가 쓰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이 조금, 보시다시피 집행률이 심의위원회가 14.5%, 공소 심의위원회가 20.8%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개최 실적을 고려해서 위원회 개최 수준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송석준 위원님의 주의 요구하고 그리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김기표 위원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형 복합기 구매 예산이 산정되었다가 전액 불용하는 등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 있고 또 내부고발자 포상금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하지 않았던 점에서 내부고발 활성화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 관련돼서 김기표 위원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또 내부고발자 활성화 관련해서 장경태 위원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공수처 인력 충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소 제기가 전체 총 6007 건의 사건 접수 중에 4건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실적이 있고 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33명 퇴직 등 높은 퇴직률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김기표 위원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요. 실적 대비 과도한 인건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주진우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끝으로 13쪽, 연구비 집행률 제고 및 규정 취지에 맞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정책연구비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불용이 1억 1000만 원이 돼서 집

행률이 29.5%에 불과했고 또 정책연구심의위원회도 모든 심의가 서면심사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점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과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김기표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규정 취지에 맞도록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서면심사만 하지 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장경태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공수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먼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하여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 공수처 시정요구는 중복 4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며 이 중 9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에 대한 시정은 제도개선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은 수사 상황에 따라 예산 집행이 발생하는 사업 등으로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고 공판활동 사업의 경우 다소 위원회 개최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었으나 공판활동 사업의 경우 공소심의위원회를 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 소위원회와 활성화하는 한편 적정 소요를 반영하는 등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 예산 3억을 2026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줄여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자체 예산집행지원단 제도를 상시 운영하여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또 분석하고 부진 사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대체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위원회 개최 계획이 과다했다 이런 자백도 있었고 또 지적도 있어요. 여기서 예산 불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어떤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계획을 하셨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가 수사 관련 위원회 예산이 6000만 원, 공소심의위원회가 11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2024년 예산이고요. 작년, 올해 예산은 2900만 원, 1100만 원으로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개최가 노력은 했지만 횟수가 적어서 올해 9월에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지고 인력의 풀을 늘리고 소위원회를 활성화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하려고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석준 위원** 그러면 사건 자체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건은 많이 밀렸는데 실제 처리한 건수가 계획보다 적었다는 건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수사심의위원회는 사실 개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많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개최에 대한 행정 인력이 저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활발하게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소심의위원회는 아무래도 아직 저희가 기초를 할 수 있는 사건 수가 적다 보니까 공소심의위원회는 다소

사건 수가 적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아직 조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긴가요? 공수처 업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조직 정비가 아직 덜 됐다는 얘긴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조직 정비가 덜 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일을 처리하면서 위원회까지 개최를 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인력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입니다. 행정 직원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85명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 실제 업무 수행하는 데 현저하게 부족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도 검사가 4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수사관도 2명 결원 중입니다. 행정직원은 많은 숫자가 외부에서 파견받아 가지고 모자란 인력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발족된 지가 몇 년 되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2021년이니까 지금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4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인력도 부족하고 아직 업무 시스템이 좀 안착이 안 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차장님이시지요, 이재승 차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검찰제도를 개편하겠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다원화 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수청을 또 만든다 또 공소청하고 분리한다, 국수위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4년이 된 이 기관도 이렇게 안착이 안 돼서 공전을 하고 예산도 매년 집행을 못 해서 지적을 받고 이러는데 이렇게 현재 오랫동안 안착이 되고 다듬어 온 이 검찰제도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또 국수위라는 전대미문의 아주 초법적·초현법적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공수처를 직접……

지금 공수처 차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작년 7월 30일에 왔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제 1년 좀 지나셨네요. 와서 느낀 소회, 원래 검찰 출신이신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검사 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검찰에 계셨고 지금 와서 공수처 업무를 1년간 해 보시니까……

○**소위원장 장경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입장과 소회 좀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시지요. 앞으로 검찰 제도 개편이 공수처의 4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떻게 좀 생각되시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지금 진행 중이신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의 뜻을 잘 수렴하시고 최선의 제도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공수처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앞

으로의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제가 좀 주제넘은 의견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는 공수처가 아직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공수처가 계속 잘 자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공직자, 저도 공직에 제가 25년 행정부에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행정부의 집행 업무를 해 본 분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정치인들은, 저도 정치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매년 4년마다 선거 치르고 선출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어쩌면 상임위도 바뀌고 그렇지만 어떤 특정 부문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가장 소상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바로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또 정치권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전문직으로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해하고 또 문제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도 검찰제도를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시고 또 4년 기간 중에 1년을 지금 공수처에서 고위직으로, 차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새로운 수사기관의 한계와 문제점을 누구보다 더 잘 인식하시고 보셨잖아요. 그런 경륜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세계에서 노벨경제학 수상자도 인정하는 오랫동안 다듬어진, 칠십여 년 다듬어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손댄다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가장 그간 공직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실상을 정확히 전달하고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해야 될 소임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소위원장 장경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 정리를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아까는 혼자 많이 말씀하시더만. 제가 진행 중이잖아요. 말씀하시는 데……

○소위원장 장경태 너무 길어지셔서 제가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도 제가 이것……

○이성윤 위원 저희도 해야 돼요.

○소위원장 장경태 아무도 안 와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최대한 드리니까요……

○송석준 위원 중요한 이 클라이맥스에서 이렇게 자르시면 정말……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하시지요. 마무리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지금 평범한 위원님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참 인품도 있어 보이시고 경륜이 많이 쌓이신 이재승 차장님, 우리의 이런 형사사법제도에 중대한 대전환을 도모할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업무적 양심과 지식과 여러 가지 경륜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좀 당당하게 정치권에 전달하세요.

이번에 대법원행정처에서도 이런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한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서 명

백한 입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정리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이 국회 정치권에 전달해 오셨고 또 공수처는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지금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당에 10여 명의 현직 의원님들이, 중진 의원님들이 지금 공수처 이것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어거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탄생한 공수처가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을, 심지어 여당 여기 법사위 간사까지 하신 박범계, 장관님까지 하신 분도 그 법 위반으로 관련해서 공수처 탄생 과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기대에 부응을 하고 우리나라의 범죄 예방 또 깨끗한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안착이 안 되고 예산이 불용되고 심지어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아까 검사 4명이 지금 결원이라고 그랬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송석준 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셨는지 알고 계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지금 아직 모집 중입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그 떠나신 검사님 네 분. 결원 4명이 어디로, 다른 데로 차출돼 가지 않았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퇴직한 검사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지금……

○송석준 위원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지금 4명…… 그러니까 결원에는 아예 지금 25명 중에 21명만 저희가 차 있는 상태이고.

○송석준 위원 차 있는 상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지금 특검에 파견을 간 검사가 4명 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중에 21명 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21명 중에 4명이 또 빠져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남아 있는 중에 또 4명이 차출 나갔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파견 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도 특검기간이 들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어렵게, 여야 의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탄생한 공수처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금 다 불용할 정도로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4명이 특검에 차출돼 나간다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민 세금이 또 이렇게 공전, 겉돌게 생겼고 또 특검은 지금 기준에 있는 각종 수사기관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여당이 됐는데 여당이 얼마든지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지휘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검이라는 제도가 자꾸 겉돌면서 기준에 공수처,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에서 정말 인력, 그중에서도 아마 우수한 인력을 또 빼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마 그중에서 업무평가 굉장히 우수한 검사 4명을 특검이 또 차출해 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차장님이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특검도 좋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안착되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좀 관계기관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하시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공수처 업무가 어쨌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장경태 고생하셨습니다.

클라이맥스인데도 감동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일단은 지금……

○김기표 위원 제가……

○소위원장 장경태 아, 질문하시지요, 위원님.

○김기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지금 송석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률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는 어렵겠지요, 공직자가. 그 다음에 특검법상에 아마 저희 공수처 검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파견이 됐을 것 같고요.

3페이지 보실까요.

차장님, 지금 1억 1000만 원이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에 그냥 써 버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산을 쓰는 것에서는 좀 있기 어려운 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공수처뿐만 아니라 KICS 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 저희가 고도화 사업이 다른 기관보다 좀 느린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고도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ISMP라는 것을 먼저 시행해서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통해서 이 고도화 사업에 대한 돈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ISMP라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을 미처 간과하고 그 예산 신청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형사사법전자문서법 시행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과 보조를 맞추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 가지고 하기에는 그랬다가는 기관 간에 또 KICS 연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재부하고는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ISMP를 먼저 해야 된다, 전용을 하려면 이쪽에서 그래도 해라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절대 저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 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일단 이게 좀 예산 계획 세우고 쓰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아무래도 좀 이게 4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조직이 좀 뛰랄까 탄탄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 사례로 보여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페이지에 보면 소형 복합기 구매 계약이 2023년 3월 30일에 체결되었는데도 고속 스캔 가능한 OCR스캔시스템을 한 대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전

액 불용했다. 이것 안 한 겁니까, 계약을 했는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 예산을 따고서 또 이게 미쳐 임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보통 못 하지, 예산 주는데 이것 임차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게 저희가 늦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같은 복합기를 임차를 해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복합기 하나 빌리는 게 뭐가 어려워서 공수처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사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사는데 돈까지, 다 예산 책정해 줬는데 지금 1년 동안 임차 하나 안 했다는 것이 그게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게 진짜 기사에 날 일입니다, 이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1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일반연구비로 편성을 해 줬는데 이게 용역사업 하는 것 같거든요. 교수들 용역사업 하는데 이런 것도,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이 되지요? 보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영역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다 세워 놨는데 아시다시피 2024년 5월에 두 번째 차장이 취임하시고 제가 7월 30일에 와서 공백기에 공고절차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경에 이것을 입찰을 돌리고 하니까 결국은 연말 정도에서야 정책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그리고 일부 이월돼서 연초에 체결되는 이런 지연사태가 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은 이해할 만한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체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장경태 1번 집행률 및 예산편성 정확성 제고에 대해서 박준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박준태 위원님의 시정요구를 하셨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혹시 주의 정도로 하면 그래도 수용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왜냐하면 박준태 위원님도 어쨌든 시정을 요구했지만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원이 다 채워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주의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3번에 고위공직자 불용액 관련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에 관한 예산과 불용액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 송석준 위원님께서 주의 조치를 하셨고 김기표·박준태·이성윤·장경태·주진우 위원님께서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석준 위원님, 어떻게 양해가 되신다면 제도개선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까지도 제도개선으로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번의 공수처 인력 충원 필요도 김기표·이성윤·장경태 위원의 제도개선과 주진우 위원님의 제도개선 사안을 모두 다 포함하여서 제도개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 3번, 5번에 대해서 이상 정리하고요.

제가 앞서 공수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을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수처 세출예산현액은 207억여 원이라는 점 정정 발언으로 속기록에 포함해 놓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이 한 쪽은 국회 시정요구를 고려해서 안정적 인력을 확보하라는 의견이시고 한 쪽은 실적 대비 과도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도개선안은 상반된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실적 대비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풍부하게 실적을 쌓으시라는 의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짧게 짧게 하시지요.

박균택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순으로 하시지요.

○**박균택 위원** 지난번에 차장님 오셨을 때 최근 6개월 동안 처리한 사건이, 예산 집행이 위낙 안 된 것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사지원 관련 예산이 불용된 게 많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6개월 동안 어떤 사건을 처리해 봤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소 건이 한 2건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최근에 기소한 사건은 혐의 모 고검에 계신 이 모 검사, 예전에 차장검사를 하셨던 분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검찰에서 일부 다 별건으로 기소를 하고 공소시효 완성 한 달 전에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이첩해서 저희가 그 부분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한 사례가 있고.

○**박균택 위원** 또 한 건은 뭐가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기소 시점이 아마 6개월은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말경에 또 전직 검사가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조사를 하다가 제보자에게 민사소송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보자 등 수사기록 일부를 보여 준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2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보면 최상목 같은 피의자들 왜 임명권을 현재가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도 임명권 행사를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한 직무유기 이런 부분은 바로 기소의견 송치가 가능할 것 같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재직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의 돈을 수금해 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박균택 위원** 이것도 뇌물죄로 공범으로 바로 기소의견 송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쉬운 사건을 놔두고 굳이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또

처리도 않고 인력 부족을 항상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품이 많이 드는 일을 위해 인력을 달라 이게 맞는 거지 인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인력 타령을 하는 것이 너무 제도 탓만 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좀 분발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제가 공수처 예산결산을 2년째 하고 있는데 공수처 와 보면 항상 똑같은 말이 예산 불용액이 많고 그러면 인력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벌써 4년이 됐고 공수처 인력은 이미 법정화 돼 있어서 그 이상 늘릴 수 없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집행지원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예산을 잘 집행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집행지원단이라는 게 저희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회계 업무 담당자가 있는데 저희가 혼자서 이것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연간 분기별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같은 것을 체크를 못 하다가 연말이 돼서야 ‘이거 우리가 지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네’ 이렇게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분야별로 여러 명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예산 갖고 있는 걸 잘 쓰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사람을 여러 명 만들어 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차장님, 예산집행지원단을 만들 게 아니고, 지금 매번 제도개선으로 인력 충원 방안을 세우겠다, 세우겠다 계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수한 인력을 빨리 뽑아서……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은 인원 중에 보니까 부장검사가 7명인데 4명만 있고 검사가 16명인데 14명이 있고 2명이 부족하고, 우수한 인력을 빨리 충원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지 불용 예산을 어떻게 하면 쓸까, 이 예산집행지원단 만든다는 게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박군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수처가 사건 빨리 수사해서……

저는 제가 차장님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6000건 정도가 접수가 되면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건을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불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몇 번, 지금 2년째 계속 우수인력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그럴 게 아니고 우수인력을 뽑으면 추진단을 만든다든가, 공수처 검사 그렇게 못 뽑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불용액만 생기고 공수처하면 불용액…… 그러면 뭐냐, 열심히 수사를 하면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산 쓰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저희한테 말하는 것은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사하고 말이지요.

아까 박군택 위원님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어렵게 고발을 하고 기록만 검토해 보면 판결문에 의해서 쉽게 기소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정말 이거 1년 내내 사건만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감사원장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수사도 상당 부분 돼 있고, 그런 것을 왜 처리 않고 그래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원성만 삽니까? 국민들께서 예산을 주면서 수사하라고 했으면 예산을 쓰면서 신속하게 기소도 하고 해야지 감사원장이 11월 달까지 자기 임기라고 지키고 있습

니다.

타이거파 사무총장 유병호 계속 감사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빨리 처리하시고 예산 다시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내세요. 이렇게 계속 내면 안 됩니다.

말로만 계속 우수인력 확보하겠다. 수사를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인력을 꽉 채워서 하겠습니다라든가 그거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십니다.

○**박균택 위원** 아마 그 사람들 사건 처리하면 우수 검사들이 관심 갖고 바로 몰릴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차장님, 공수처가 수사 4부까지 편제상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를 들면 부장검사급으로 공판부 검사를 따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공수처가 수사 위주로만 돼 있기는 한데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전문 부장검사급의……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어찌 됐건 저희가 인원 조정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부장검사 7명에 평검사 16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도 한부장당 평검사 한 세네 분이 계시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은 있는데, 네 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 분 정도라도. 그런데 만약 그 편제가 잘 구성이 안 되면 공판 중심의 부장검사님을 따로 좀 하셔서 역할 분담하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소위 현원을 남기지 않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원 고위 간부 제가 다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요청으로 추가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그려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공수처 소관 결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6건 해서 중복 1건을 제외한 총 6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고 시정요구에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차장님, 예전에 경찰 인력도 파견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개별 수사할 때 받은 적도 있고 출범 초기에도 일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파견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현원을 늘리거나 수사팀 보강이 부족하거나 등의 이유로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셔서 경찰 인력이라도 파견받으시고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채용 절차가 어렵다고 하시면 파견 등의 방법도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안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소관 심사를 위한 장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정부 측 의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헌법재판소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16건의 시정요구안이 있고 16건 모두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6건의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김기표 위원, 박군택 위원님께서 헌법연구관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함에도 6개월 이상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헌법연구관 등의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 충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시정요구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김기표 위원, 송석준 위원, 이성윤 위원, 장경태 위원, 주진우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하사건을 제외한 헌법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725일이므로 180일을 4배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셨고 심판사건의 처리 기간 지연으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장기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헌법재판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사건의 경중, 난이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한 사건 배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입니다.

나머지 14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소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헌법재판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특근매식비 불용률이 높게 나오네요. 최근 3년 매년 불용률이 50%가 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 전체 기관 아니고 재판연구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쪽 연구기관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안을 좀 감액할 계획입니다.

○**송석준 위원** 재판연구원이면 헌법재판소의 소속기관인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소속기관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통으로 헌법재판소 특근매식비로 예산이 편성되나 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헌법재판소에 편성돼 있는 특근매식비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자체 특근매식비는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자체 특근매식비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거의 상당 부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정확히 아셔야지.

지금 누가 통계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통쳐서 얘기하면 결산심사받는 자세가 아니지요. 재판소 직원들은 문제 없는데 산하 소속 연구원에서 이런 일이 많다 이렇게 돌려치기하면 안 되지요. 자료로써 제시해서 기관별 내부의 실태 자료를 보좌진에게 제출한다든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제시해 줘야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전체 부처 특근매식비에 대해서는……

○**송석준 위원** 불용률이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불용률이 한 15% 정도……

○**송석준 위원** 15%면 적은 게 아니네. 그러면 연구원은 얼마나 돼요? 지금 이 수치가, 제가 제시한 50% 넘는 수치들이 다 연구원만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연구원만입니다.

○**송석준 위원** 연구원만이면 거의 칠판십 프로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체에 15% 나 된다며. 15%라는 게 연구원과 재판소 사무처의 직원들 전체 평균이에요, 아니면 연구원을 뺀 일반 사무처 직원들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장경태** 답변하실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만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15% 정도로……

○**송석준 위원** 15%가 연구원을 뺀,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일을 좀 계획한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일반 공무원들은 특근매식비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난리예요. 실제 자기들이 지출하는 것보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다른 데 여기저기서 조달하다가 문제도 생기고 이러는데 헌법재판소의 기현상이네요.

그다음에 연구원에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연구를 해 줘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제대로 된 헌법,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나 뜨거운,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여리고성 돌듯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한겨울을, 그야말로 노숙을 하시면서 지켰잖아요. 그만큼 예민하고 정말 어려운 국가 유사시에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이번 상반기에는 많이 부족하셨겠네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느 정도 부족했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올해는 거의 다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직원들 허구한 날 밤새고 특근을 많이 했을 텐데 부족한 건 어떻게 충당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로 충당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게 열렁뚱땅 얘기할 게 아니지요. 여기는 결산심사장인데 수치로 얘기를 해 줘야지, 수치로.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소장님께서 격려차 여러 가지 본인이 쓰셔야 되는……

○**송석준 위원** 개인 사비를 쓰셨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아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처·차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원을 간부들이 해 주셨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송석준 위원** 어떤 식으로? 거기서 또 그런 무리수를 둬서 회계상 문제가, 잡음이 생기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직원들한테 식사, 밥 사는 것은……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사적으로?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본인들 경비를 가지고 쓰신 거지요.

○**송석준 위원** 본인의 경비?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업무추진비로 배정돼 있는 기관장들의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직원 격려차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경비들이니까……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문제가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개인적으로 호주머니 돈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업무의 사용 용처가 있잖아요, 목적.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업무와 관련된 경비 내지는 직원 격려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원래.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업무추진비는 그런 거고 여기서 말한 특근매식비는 또 특근매식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명확하게 회계 부분을 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금년도 상반기 들어와서 특근매식비 지출 현황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 특근매식비가 부족해서 간부들이 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관련 자료 주시고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특근매식비 집행 현황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여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지난해 연구원의 불용률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많았던,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 자르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려고 그럽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감액할 예정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과거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특근매식비 1000만 원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제대로 편성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대로……

○**송석준 위원** 자르기보다는 그분들이 일 좀 하게 독려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잘 다듬어진 헌법제도 잘 지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헌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널리 알리고 또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 안 하시고 준 예산까지도 집행 안 하고 일찍일찍 퇴근하시고.

연구원님들이 거기 계시다가 이직률이 높으신가 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이직률도 좀 높습니다.

○**송석준 위원** 높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학으로 가거나 임시로 경력 쌓기용으로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될 텐데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셔야지요. 재판연구원이 불필요하고 그런 기관이라면 과감하게 폐지하든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차장님의 한번 엄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혁신을 하든 아니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시든, 관련 실태조사해서 앞으로의 관리계획 별도 보고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판연구원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헌법재판소법에 정원이 40명으로 둑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음에 비해서는 규모도 너무 적고 사실 관련된 예산도 너무 적고 그렇습니다. 차제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헌법재판연구원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헌 논의가 많이 있고 사법개혁이다, 검찰개혁이다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 것들이 어쩌면 근본적으로 헌법 테두리 내에서 개헌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개헌을 함께하면서 또 아닌 부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서로 상호 긴밀한 연구와 또는 정보 교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실효적으로 업무가,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안을 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특근매식비가 헌법재판관님들 특근매식비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재판연구원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재판연구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총액이 1000만 원 예산편성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몇백만 원이 불용됐다 이 지적이지, 혹시나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리고요.

15번에 헌법연구관 연수에 대한 보고서 내실화하는 것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도 연수 부실 보고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논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4번 특근매식비하고 12번 예산집행 부분은 시정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14번은 철회하는 걸 전제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려면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차장님, 아까 40명으로 제한돼 있다는 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아닙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입니다.

○**김기표 위원** 헌법재판연구원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김기표 위원** 죄송합니다만 헌법연구관과 어떻게 다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헌법연구관은 저희 재판관님들을 보좌하는 본부에 편성돼 있는 헌법연구관님들이 계시고요. 저희 소속기관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 부분에 대한 정원이 법에 4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헌법연구관에 대해서 조금, 2번 헌법연구관의 직위 겸임 관행 지양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조직 문화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시면서 비서실장을 한다든지 공보관을 하면 약간 승진 개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아마 겸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 보는데……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법에 별정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왜 겸임해서 불용이 자꾸 발생을 하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옛날에는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소장님들이 외부 인원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내부의 인원들을 비서실장을 시킵니다. 그러나 보니까 연구관이 주로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일 연구관님들이 별정직으로 발령을 내게 되면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겸임 발령을 내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거는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계속 그렇게 갈 건지. 왜냐하면 아까 재판 인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TO를 쓰고 예산 불용이 자꾸 지적받고 이러는 것이……

물론 헌법재판소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오시면 같이 일하던 분, 호흡 맞춰 오던 분이 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꼭 그거를 보장해 줘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생각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법개정 사항이라서 같이 좀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건 자꾸 이렇게 지적받을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9번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2번 지하 전기차 충전기,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좀 어이없다고 그럴까? 지하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4400만 원 받아 놓고 하나만 옮기고 나머지 신규 완속충전기 만든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김기표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는 원래 지하에 2대밖에 없었는데 1대는 옮기는 대신에 그 비용을 가지고 4대를 새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 짜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임의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편성한 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때 사정상으로 전기충전기에 대해서 조금.....

○**김기표 위원** 기재부나 이런 데 다 논의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아니요.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기표 위원** 적어도 예산과 좀 다르게 쓰는 거면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일이라도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임의로 그렇게 써 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이거는 기본경비.....

○**김기표 위원** 절차를 거쳤나요, 최소한의 절차라도?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이거는 주요사업비에 편성된 사항은 아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김기표 위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기본경비 안에 포함돼 있는.....

○**김기표 위원** 제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지하시설에 있는 걸 다 옮기는 걸 전제로 예산을 받았는데 하나만 옮기고 나머지를 완속충전기를 지하 1층에 설치한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12번은 저는 철회했으니까 김기표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 수용하시나요, 차장님?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또 추가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박균택 위원** 헌법재판소가 정말 상반기 때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감사드립니다.

○**박균택 위원**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어떤 사정인지 국민들이 희망하고 언론이 예측하는 시기보다 3주 가까이 재판이 늦어져서 너무도 많은 분들 애를 타게 하고 정말 고생들도 많았고, 저도 그때 이렇게 얼굴이 더 시커멓겠습니다. 정말 그런 애탠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기간 3주 늦어진 것만 없으면 얼마나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감사의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님들의 3주 정도의 재판 지연 외에는 내부 구성원들, 재판관님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내부 재판연구관님들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아까 특근매식비가 거의 다 쓰여 버렸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상반기에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박균택 위원**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격려하는 방안이, 격려하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근무 과정에서 특근매식비가 다 쓰여서 부족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한다면 뭔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신청한다든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좀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연구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일단 지금은 또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아무튼 상반기의 특수 사정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비비를 신청한다든가 등의 방법으로 뭔가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박균택 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송석준 위원님,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또 길게 하실까 봐.

○**송석준 위원** 그거를 이렇게 조건부로 달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장경태** 말씀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처리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법정 180일 처리 기간을 무려 4배를 도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처리 기간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최근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 작년·올해는 탄핵 사건이라든지 권한쟁의 사건들이 많이 집중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오는 사건의 건수도 건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사건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연구관님들의 숫자라든지 그런 인적·물적인 하드웨어가 조금 부족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어쩌면 재판 운영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가 여러 가지 뭔가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송석준 위원** 뭔가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고 미처리 사건이 늘어나고.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시스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연구된 게 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가 과거에 2년 전에 연구용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시고 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헌법연구관 증원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인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 베이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급격한 증원은 기재부에서 사실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법원하고도 업무가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는 뭐 따로……

○**송석준 위원** 법원 업무하고 서로 이렇게 상충되거나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여지는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판소원이 인정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현 사법시스템에서?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자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사법개혁을 한다면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하고 기존 법원 시스템과 뭔가 서로 보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더 서로 상호보완적인 유기적인 연계 관계를 좀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재부와의 협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도 헌법연구관을 대폭 증원을 해 주시면 많은 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전체적인 증가율의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관만 대폭 증원해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단계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런 사건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원천적인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한 사건들로 인해서 서민들 생계가 무척 힘듭니다. 우리 사회 각종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소송 사건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생은 점점 힘들어지고 기업들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을 바로 현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허점이, 문제가 뭐라는 거를 분석을 해 보면 나오잖아요. 또 경제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법률적 잣대를 넘어서 이러한 과도한 소송 사건들 또 국민 권리구제를 위한 현법재판소에 하소연하는 그런 사건들을 근본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행정부에서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일선 지자체나 행정부에서 굳이 이렇게 국민들이 마지막 현법재판소에 하소연하는 일이 없게끔 그런 어떤 환류 기능을……

그러니까 연구원이 특근매식비를 광광 안 쓰고 이렇게 남기고 적당히, 힘드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교두보로 쓰지 않게끔 현법연구원이 어쩌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 말씀도 맞으시고 어쨌든 저희 현법재판소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런 기능들도 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만큼 우리 사회의 현행 사법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지요.

○**현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가 마지막 보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사건들이 느는 게 맞냐, 주는 게 맞냐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그런 분들의 마지막 그런 어떤 거를 저희는 버릴 수는……

○**송석준 위원** 누적된 미처리 사건, 장기미제 사건 이런 거에 대한 분석 가장 좀 정치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된 자료 있지요?

○**현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송석준 위원** 이게 뭐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니까.

그것 본 의원실에 보내 주시고 한번 담당 되시는 분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현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필요하면 재판연구원의 관계자도 같이 해 가지고요.

○**현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하여튼 저희 사건이 지체되고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재판관의 구성, 9인체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법재판소가 완비되지 못했던 그런 저간의 사정들도 많이 작용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시지요.

○**현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소위원장 장경태**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방금 송석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인력 부족에 있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는 상당 부분 인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현재 재판연구관만 증원하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재판연구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이 수행합니다.

○**이성윤 위원** 연구관이 부족해서 사건이 지연된다?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정부부처나 인력 타령만 한다, 예산 타령만 한다 그러거든요.

미제가 4년 이상 된 것도 55건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현재의 신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는데요.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률을 보니까 약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선대리인 제도면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 아까 차장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마지막 권리구제 절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곤궁한 사람들이 청구하는 것이 국선대리인 제도 맞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대부분 90% 정도를 기각한다는 뜻은 그분들이 신청할 자격이 없거나 또는 곤궁하지 않았는데도, 자력이 있는데도 신청한 사람으로 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는 매년 신청 건수는 1000건인데 인용되는 건수는 14%에 불과하다 하니까 나머지 그러면 85%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해서……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적법하지 않은 요건의 사유로 인해서 각하되는 사건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사실은 국선대리인이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윤 위원** 각하만 안 되면?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국민들은, 저도 헌법소원 한번 제기해 봤는데 각하가 됐어요. 저는 어떤 의견을 내라든가 뭘 보전을 하든가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각하가 오더라고요. 국민들은 각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변호사가 없어서 그랬나 또는 내가 주장을 잘 못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헌법재판소도 아까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짜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들이 마지막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도 좀, 각하 부분에도 보면 충분히 할 얘기를 하고 각하를 좀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우편부가 등기송달로 각하했다고 오면 그 심정 어떤지 아세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각하되지 않은 것은 모두 국선대리인…… 사실은 85%의 헌법소원을 냈던 헌법재판소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던 분들이 각하 통지서를 받고 내가 변호사를 선임 안 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각하 사건에 대해서 변호 국선대리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제도의 취지에도 좀 안 맞을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헌법재판소 결산과 관련해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1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환기와 이석 등의 이유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현재 시각 16시 43분입니다.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17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교정본부와 검찰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 부서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기조실 관련해서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부분 기조실 4건 있는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1번 과태료 등 장기·과다 미수납액 관련 대책인데요. 세입과 관련해서 과태료와 변상금 등의 미수납액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고요.

다음,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돼서 토지대여료 등의 항목의 수납 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등이……

○소위원장 장경태 수석전문위원님, 기관의 이견이 있는 부분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12쪽도 일반용역비를 연구용역비 성격에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서 주의 의견이 있었고요.

14쪽에 연구용역 연말 추진, 예산집행의 적절성 관련해서……

○소위원장 장경태 이견 있는 부분만 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이견 없어 보여서 설명에 갈음하도록 하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 법무부 기조실은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에서도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법무부 이견 없으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김기표 위원 예,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기관이 수용을 많이 해 주시면 빨리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조실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19쪽, 법무실인데요. 법무실도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일별 하시면서……

5번, 공익법무관 배치의 적정성과 관련되어서 공익법무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에 맞춰서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이 있고요.

21쪽에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라는 요구가 있고요.

다음, 23쪽입니다.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급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실적 제고 필요인데요. 상사중재원이 하는 중재 건수 이런 게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28쪽, 공익신탁제도가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되어서 10년 정도 경과됐는데 역시 기부 활성화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새로운 기부모델 창출 등의 제도개선을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전자공증제도 역시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한데 공증 전수 전체 대비 전자 공증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부분을 제도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34쪽 마을변호사 사업도 역시 1425개 마을에 마을변호사 배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변호사 배치할 무변촌 현황이라든지 상담 실적 이런 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38쪽 변호사시험 관리시스템 구축 고도화인데 변호사시험제도는 CBT 컴퓨터 기반 방식으로 변화했음에도 출제 중복 검사 이런 것에 대해 실제로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전산화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송석준 위원님의 의견이고요.

또 법무부는 법전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기출문제 제출을 받는 걸 제고하고 그런 걸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문제은행 이런 걸 통해서 시험관리를 좀 더 전산화하고 고도화

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김기표 위원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41쪽 정책연구비도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제가 제출하신 원자료를 쭉 보니깐 국가배상금 관련해서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월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진 항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전 한 2021년도부터 계속 지적도 받고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국가배상이라는 것이 소송을 하는 결과상 나오는 거라 아마 예측하기가 굉장히 난망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형제복지원 관련해서 그 부분이 여러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신경도 쓰고 하다 보니까 상고 취하 이 문제를 법무부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해결이 잘됐는데 문제는 상고 취하가 돼도 배상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사실 상고 취하도 취하고 하는데 빨리 배상을 받기 위해서 상고 취하도 논의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아니면 배상금을 예산으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배상금에서 지급할 돈이 없을 경우에 실제로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즉각적·즉좌적인 방법이 좀 마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서 바로 이월해서 쓸 수 있다든지 하는 선 규정 같은 게 있어야지 만약에 예비비로 편성하면 이거 또 기재부 승인받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무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제가 장관님한테도 대책이나 이런 것을 촉구하는 질의를 한번 드릴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을 하셔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

○법무부차관 이진수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2002년부터 매년?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02년이면 벌써 23년 됐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그러면 연구 실적이 많이 축적이 됐겠네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축적이 돼 있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통일법무과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송석준 위원 통일법무과가 별도로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통일법무과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그러면 2000년대 초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별도 과로 운영되고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신설 연도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설립된 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더 오래됐네요.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통일법무과 과장님은 행정직이 하시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이번에 보임된 통일법무과장은 부장검사입니다.

○송석준 위원 부장검사. 이게 그 동안에 축적돼 왔는데 지금 북한하고 연계해서, 북한이라든가 해외의 무슨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업 연구도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연구진들로만 구성돼서 하고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통일대비와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통일부라든지 다른 부처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기관과의 협업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국내에 무슨 통일연구원이나 이런 다른 부처 소관 연구기관에 연구 발주도 하고 자체 또 법제연구원이나 이런 데 발주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전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산학협력단도 있고 또한 경제연구원이라든지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라든지 여러 단체에 필요한 주제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상호적으로 가야 법제연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과의 네트워크는 지금 요즘 같아서는 전혀 없겠네요? 과거에 혹시 북한과 공동연구한 실적은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과 공동 연구 부분은…… 북한과의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북한과 네트워크는 없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송석준 위원 이게 매년 예산 수준은 이 정도 수준으로, 7~8억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예산 부분에 큰 변동차는 없이 연도별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석준 위원**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요즘 또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퇴색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탈북인들에 대한 법적…… 여기 연구 중에도 그런 게 있겠지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가 있을 텐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잘 정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주제 중의 하나로서 연구를 이어 오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을 찾아온 통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북한하고 지금 굉장히 경색돼 있는 국면에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인들이 우리 사회에 효율적으로 정착하는 데 법률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탈북주민들의 실태를 보면 굉장히 적응을 못 해서, 사회주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다가 한국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시 또 월북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우선 이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연구, 지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서 지금 통일부, 국정원과 연계해서 함께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통일법무과에서 직접 하나원 관계자와 면담을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일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그게 나중에 남북관계가 하나가 됐을 때도 빠른 시일 내에 국민 통합이 되는 하나의 전제, 사전훈련 내지 그런 경험이 축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이쪽 분야 연구에 소홀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다 더 내실 있게 연구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정착을 할 때 어쩌면 북한 체제가 스스로 문을 열고 같이 하나 되는 계기가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저한테 별도로 담당 과장님은 연구 성과 또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관련된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요구 12번 변호사시험 관리시스템에 제도개선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구 수정만 위임해 주시면 문구 수정해서 내일 전체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44쪽입니다.

인권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권국 3건인데요.

14번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효율적 예산 집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개최 실적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활성화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돼서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고 또 회의 활성화 관련돼서 김기표 위원 등이 제도개선 요구

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문구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47쪽입니다.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이 부분도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사후에 대상 확인 절차가 미흡하고 데이터 관리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부분과 관련돼서 김기표 위원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요. 장경태 위원의 또 다른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구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끝으로 인권국 범죄피해자보호기금, 49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효율적 예산 집행인데요.

이것도 여가부 지원을 받는 해바라기센터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더불어서 원스톱솔루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부처·기관이 존재하는데 이런 지원체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김기표 위원 등의 제도개선 요구하고 원스톱솔루션센터의 인적 구성의 적정성이 맞는지 부분 등을 점검하라는 이성윤 위원 등의 제도개선, 두 유형도 문구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인권국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구 수정에 관한 사항만 위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51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총 6건인데요.

이민정책연구원의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집행 목적 이런 게 투명하게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개선하라는 제도개선이고요.

52쪽, 세부사업비를 하면서 기본경비하고 사업비를 혼용해서 지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개선을 하라는 요구가 있고요.

다음, 53쪽 외국인보호관리와 관련돼서 최근 3년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연속 미흡 2회 이렇게 받아서 한 번 더 받으면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폐지가 되지 않도록 절처하게 집행 관리를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55쪽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얘기인데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상대국 배우자가 입국이 국내 한국인 배우자의 강의 수강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사적 영역을 제한하고 이 부분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56쪽, 관례적인 인건비 이·전용을 통해서 여유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연례적으로 있어 왔는데 인건비를 감액 조정한다든지 이·전용을 최소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22번, 58쪽입니다.

난민 심사를 위한 전문임기제 인력인데요. 난민 심사를 위한 전문임기제 인력이, 아무

래도 전문임기제도 조금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보니까 정식 직제 내 정원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 난민 심사 인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고요.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출입국·본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 차관님 오른쪽에 앉은 분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 난민심사위원 담당관님들이 전원 다 전문임기제이신가요?

차관님 모르시면……

○**법무부차관 이진수** 허락해 주시면 출입국본부장직무대행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보고해 주시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현재 난민 전담 공무원이 90명이 있습니다. 90명 중에 50명이 전문임기제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나머지 40여 명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저희 출입국 공무원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민정책연구원 예산 집행은, 총 예산이 얼마라 그랬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25억 6200만 원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과거보다 매년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이게 꾸준히 늘어 왔나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이게 매년 비슷한 수준이고 연구원 증원 수요 정도 만큼만 조금씩 늘어나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연구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연구원이 최근에 조금 늘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늘었어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송석준 위원** 그게 연구 수요가 많이 좀 있나 보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최근에 연구 수요가 많고 또 워낙 작은 연구원이라, 지금 연구원 정원이……

○**송석준 위원** 이민정책연구원을 좀 내실화해 가는 단계에 있나 보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처음에 설립할 때 요구했던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단계적으로 인력도 늘리고 지금 연구원 내실을 기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나 보지요?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 송석준 위원 우리 이민 숫자 통계 파악된 게 있지요, 이민 통계?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 송석준 위원 그게 매년 증가율이 어떻게…… 증가 추세겠지요?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체류 외국인은 지금 꾸준히, 코로나 시절 한 이삼 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우상향이지요? 그게 혹시 통계적으로, 퍼센트로 수치 나온 게 좀 있나요?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통계……
- 송석준 위원 지금 체류 외국인 이분들도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 대상으로 관리하나요? 체류 외국인……
-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사회통합 문제 그다음 우리나라 국민과 어떻게 어울려서 함께 생활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그와 같은 정착 문제와 함께 체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 송석준 위원 체류 외국인 중에는 정상적인 비자를 받고 살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불법, 노동을 위해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분도 있고.
-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체류 외국인은 현재 270만 명으로 보고 있고요. 불법체류 외국인은 현재 40만 명에서 조금 줄어서 한 38만 명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40만에서 좀 줄어드는 추세.
- 그분들이 문제가……
- 법무부차관 이진수 단속을 통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체류 외국인 270만 명 중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38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10%를 넘어서는 수준에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범죄가 발생해도 잘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보면 강력범죄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 송석준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또 그분들이 마약 범죄와 연루된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부분은 외국인 범죄 대책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들이 유형별로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불법체류자가 모두 범죄와 연결된다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대응 부분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송석준 위원 외국인 범죄 업무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다루나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 관련된 부분은 검찰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출입국본부도 외국인의 체류 정책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270만 정도를 보시는데, 이게 과거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체류 외국인 숫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 통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 추이를 한번……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추이를 보시면 최근 5년간, 2020년도에 200만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송석준 위원** 20년도, 5년 전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73만입니다.

○**송석준 위원** 굉장히, 5년 내에 엄청난 규모로 증가한 거네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8년 정도면 한 300만 명 정도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천몇 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한 28년 정도면……

○**송석준 위원** 28?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송석준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민노총이나 한노총 노조에 가입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지금 가입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가입에 제한이 없나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확실한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송석준 위원** 그러면 가입 숫자가 꽤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것 실태 파악된 게 없나요? 예를 들면 계절노동자 이런 분들,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들어온 분들, 불법노동자는 당연히 가입이 불가능할 거고요. 그렇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송석준 위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법체류로 이미 체류 기간, 비자가 만료되고 이런 분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더 잘 알다시피 노조 관련해서는 지금 양대 노총 등 노총이 있는 상황이고요. 각 사업성별로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에 가입됐는지 여부는 노총이나 노조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저희가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가입을 했다가 여러 체류자격 등에 문제가 생겨서, 그다음에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자격

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처음부터 불법체류자가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송석준 위원 혹시 뒤에 통계 있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관련 통계요?

○송석준 위원 법적으로 제한은 없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노조 가입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법률상 어떤 요건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른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어떤 요건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외국인 정책의 가장 핵심은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향과 그런 것 정확히 분석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업무인데, 노조 가입 여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하면 이것은 심각한 정책 방기 아닙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이미 90년대에, 99년도에 대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 가입에 제한이 없다고 나온 판결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는 건 제한이 없는데 그 노조의 가입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 출입국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저희가 그 현황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체류 외국인들 대부분이 사실은 국내의 부족한 일손,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계절근로자서부터 외국인 비자 발급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노동시장, 노동 정책과도 아주 직결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정식 허가받은 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유사시에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쩌면 내국인 관리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법무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지요.

한 측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심각한 범죄랑도 연관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부족한 노동력, 예를 들면 힘한 노동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국인들이 잘 안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꼭 필수적인 건설현장 또 굉장히 힘든 영농현장,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현장에 이분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노동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유효한 산업현장이 올 스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장경태 이제 마무리……

○송석준 위원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이런 얘기 하면 또 자꾸 간섭할라.

○소위원장 장경태 마무리를……

○송석준 위원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국내 기업들의 노동력 현장에서 굉장히 엄청난 정책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일반 기업에서 이분들의 노조 가입 여하에 따라서 노동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노조 가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래서 국내에 노란봉투법이 주는 파장 효과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그래서 국내에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성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애로 또 우리 산업현장의 현실과 비추어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의 동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관님.

지금 기업들이 심각한 충격에 빠져 있어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제는 모든 쟁의가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외국인 체류 노동자들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충격이 좀 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기에서도 뭔가 변화가 오게 되면 일순간에 오히려 더 산업현장에 마비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한번 실태 분석을 해서 산업현장의, 기업인들의 애로 해결에 어떻게 하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체류 외국인 정책을 통해서 이런 걸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 분석을 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외국인 근로자가 현재 노동현장에서 부족한 노동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더 유념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불법체류 외국인도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노조가 허용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부가 이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과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송석준 위원** 아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하면 충분히 데이터는 구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석준 위원** 왜냐면 법무부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외국인 정책하고 직결되면서도 산업현장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것, 내 것 아니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법정부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를 하고 머리를 맞댈 때 법무부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서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법무부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하면 데이터 다 나오지 뭘 그렇게 일을 소극적으로 하려 그래요?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일단 김기표 위원님 질의를 종합해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송석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 법률 검토도 하셔야 될 거고.

○**송석준 위원** 이따 다시 한번……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노조에 가입 안 됐던 부분이 굉장히 더 가속화된다면 산업현장의 급속한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처 간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어제 그게 국무 회의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곧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대 위기로, 쓰나미로 빨려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치밀한 대응과 현황 분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차관님, 아시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산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송석준 위원 이 부분에서 외국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옆에 계신 분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입니다.

○송석준 위원 단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상황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된다고 쓰나미 이런 것 안 일어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송석준 위원 안 일어날까요? 약속할까요?

○김기표 위원 안 일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송석준 위원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김기표 위원 송 위원님, 제가 얘기할 때 조용히 해 주세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나는 거드는 거지 방해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기표 위원 국가기관이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를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요. 법무부라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묻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차관께서도 그런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3쪽 볼까요? 나중에 예산 과정에서도 제가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외국인보호관리 항목인데 ‘단속으로 보호된 외국인의 국내외 호송, 수용관리 및 강제퇴거를 집행하고 이력이러한 예에서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이런 명목이고, 보니까 3년간 연속 미흡 2회, 보통 1회 받았고 2024년 사업비는 11억 5400만 원이 삭감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번 더 미흡이 나오면 이게 정책이 폐지된다는 건데 일단 폐지돼도 좋은 사업인지가 궁금하고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미흡이라는 평가를 두 번이나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명목은 좋은데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이 내용을 보면 드는 거예요. 뭐지요, 이게?

○법무부차관 이진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이게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에 구호·

교정비, 호송 여비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러니까 보호소 운영에 관한 경비입니다. 보호소 운영에 관한 경비라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이 사업이 폐지된다면 보호소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중요한 예산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면 보호소 가는 그것 말입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 집행하는 예산이에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미흡이 나왔을까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좀 못 받았는데요. 보호 외국인 수치가 단속 여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들쑥날쑥하다 보니, 이게 단속이 많아져서 예산 이·전용을 좀 한 것 때문에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감점을 좀 받았고……

○**김기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못 알아듣고. 갑자기 많아져서 다른 데서 이·전용해 온 것이 지적받았다는 건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추계를 해서 잘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예상을 잘 못 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미흡을 받은 거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성과 홍보가 좀 미흡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홍보를 잘 못 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미흡이 나오나요, 홍보 못 했다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런 것들이 자료로 들어가 있어서……

○**김기표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보세요. 저희한테 직접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내 줘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이게 어떤 항목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필요한 그런 거라면 미흡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진짜 필요하면 미흡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정에서도 그걸 제가 좀 볼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91쪽, 국제법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건인데요.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제고 방안 관련해서 국내 기업이 외국 법률회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국내 법률회사의 자문을 받는 것보다 더 많아서 적자폭이 증가하는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현황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송석준 위원님이 하셨고요.

93쪽으로 가겠습니다.

93쪽의 국제법 전문위원 공백 기간 최소화 필요인데요.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법 전문위원은 아무래도 변호사나 박사님들,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대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높은 퇴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처우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요.

끝으로 95쪽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비용과 국제법무국의 기본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예산을 이용 절차를 정확히 거치지 않고 혼용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국제법무국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현황 관리는 안 하고 계셨었나요? 원래 해도 되는데 억지로 안 하신 건 아니지요?

○**법무부국제법무국장 정홍식**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까요?

○**법무부국제법무국장 정홍식** 예, 법률서비스 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많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제공은 아시다시피 크게 자문과 분쟁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투자를하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해외 법령이라 할지 해외의 어떤 법률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은 국내 변호사나 국내 로펌들이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 로펌들이나 한국 변호사들이 한국 회사들을, 한국 기업들을 좀 더 많이 법률대리를 하는, 소송대리를 하는 그런 상황과 아울러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분쟁 해결을 하는 그런 국제 중재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다음 113쪽, 범죄예방정책국 6건인데요.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 정착률 관련해서 소년원생 재입원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자립 지원 기관이 있음에도 인지도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의 인지도를 높여서 재범률을 감소시켜 달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요.

다음, 116쪽입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의무관 정원이 부족해서 의무관 정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소년원 의무관 등의 결원이 있어 가지고 소년원 내에 의무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처우 개선 등을 통해서 의무관을 조속히 충원하라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117쪽, 생활보호 사업에 대한 직접지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생활보호기금이 수입 대비 지출액은 적어서 매년 기금이 누적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규모를 확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19쪽, 국립법무병원 의료인력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정신과의사 등 아무래도 의료인력이 항상 처우 개선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 등을 포함해서 의료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122쪽, 위기상황자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의 사전 편성이 필요한데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매년 좀 들쭉날쭉한 그런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의 숫자를 좀 더 합리적으로 추계해서 적정 규모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124쪽, 57번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사업은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사업을 집행했는데 일반수용비는 기본경비에 해당되고 일반용역비가 기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등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용역비가 좀 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지금 소년원 시설이 부족하거나 또 소년원의 입소율이 낮아진다든가, 지금 소년원의 입소 추이는 어떤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소년원 정원은 1350명인데요, 약 1600명이고 수용률은 약 1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과거보다는 수용률이 높아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2020년 이후로 소년원 수용 인원은 늘어나는 추세이

고요. 청소년 범죄 현황도 보면 촉법소년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이 늘어나고 있고 연령이 연소화되고 있고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강력범죄도 더 늘어나고?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사실 요즘 인구가 자꾸 좀 줄어든다고 그래서, 학령아동이 주는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소년들,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련 대책 예산이 올해 충분히 편성됐나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올해 아주 풍부하지는 않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나름 노력해서 내년에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어떻게 하는 별도의 정책 수단이나 그런 정책은 있나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저희가 외국인 비율이 약 1% 정도, 소년범에서도 약 1%가 외국인들이 점하고 있고요. 외국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의사소통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서, 그리고 그 1%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한국인에 준해서 그렇게 교육과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범죄예방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청소년이라든가 특정 계층에 대한 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반범죄 예방 정책은 국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한 가지 설명드리면 외국인 관련해서 지금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보호관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거나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형기를 마치고 강제 출국이 되기 때문에 그 후의 보호관찰 등의 업무는 담당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송석준 위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추이는 어떤 편이에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약 1% 정도 숫자는 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하는 비율이 조금씩 변화함에 따라서 저희가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대략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년 수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설명 보고 끝으로 126쪽의 법무연수원 포상금 용도에 사용된 기타운영비 내역인데요. 포상금 명목은 포상이라는 정확한 비목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타운영비를 가지고 포상 이런 부분에 사용됐기 때문에, 기타운영비로 사용하면

비목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포상비로 정확하게 설정해서 지급하고 기타운영비로 지급한 사례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상금으로 편성·집행하라는 제도 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의 형태는 그러면 현금 지급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좌이체로 지급하신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격려금 예산 등 정확한 집행 방법은 현금 지급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까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현금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뒤에 보고하시려고 그랬던 분, 실무자분께서는……

현금 맞습니까?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현금으로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소위원장 장경태 그런데 2024년 12월 4일에 4분기 우수직원 격려가 예년, 이전에 있던 격려비용 지급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한 300만 원 정도가, 350만 원이 최다 지급이었던 것 같은데요. 연말 포상인가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8월 달에도 보면 많이 지급된……

○소위원장 장경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니까 월별로 3월, 5월, 6월, 8월, 쭉 지급하시고 8월에 행사 지원, 21일에 많으셨나 보네요. 그리고 9월, 12월 이렇게 있는데 12월 4일 날 격려금이 지급 많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법무연수원에서?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법무연수원 총무과장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8월 달에도 지급이 된 게 연말하고 비슷한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8월 달 정도에 상반기 교육이 전체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전체적으로 격려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도 하반기 교육이 전체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격려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원래 예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예년에도 8월 달에 격려금 지급을 많이 하셨나요, 포상금 지급을?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년 자료는 파악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갑자기 너무 뜬금없어서…… 휴가 복귀하고 나서, 8월 8일에는 휴가 기간, 휴가 아닌 분들에 대한 격무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격무 지원에 대한 격려금이라는 건 휴가기간에도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 것 같고 각종 행사 지원은 하계 수련회 같은 게 있나요, 법무연수원에?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수련 행사는 아니고요.

○소위원장 장경태 하계 워크숍에서 지급된 금액인가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좀 이해가 되기 쉽고요.

그런데 2분기 우수직원 격려나 3분기 우수직원 격려가 330만 원씩 나갔는데 4분기 우수직원 격려는 840만 원 또 연말 격려도 있으니까 ‘연말에 많이 주셨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2월 4일이 워낙 또 엄중한 날이라서, 저희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던 날이라……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그러니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수여 내역 중의 세부 내역에 시설물 유지관리, 급식 업무 등 수행 관계자, 미화·조경·조리 공무직 등에 대한 격려가 12월 4일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 내역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면 좋겠네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다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법무연수원장님.

연수원장님이세요, 누구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총무과장입니다.

○송석준 위원 총무과장님?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총무과장입니다.

○송석준 위원 법무연수원장은 누가 와 계세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지금 공석 중이십니다.

○송석준 위원 공석이세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송석준 위원 전임은 누구세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신자용 원장님이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사임하셨나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송석준 위원 법무연수원 예산이 얼마지요, 지난해 집행 예산이?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한 이백팔구십억 정도 됩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다 교육비 예산이지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절반 정도는 인건비입니다.

○송석준 위원 인건비고.

여기에서 교육받는 분들은 판사나 사법부 분들은 교육 대상이 아닌가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법무부 직원들입니다.

○송석준 위원 법무부 직원들. 그러면 사법연수원은 따로 있고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법원공무원은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주로 수사관들, 검찰 소속 검찰직 수사관들이나 검사들?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신임 검사님 그리고 검찰 각 직렬별 신규자 그

리고 공무원 중에서 역량 향상 과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송석준 위원** 중견 검찰 간부들도 교육 과정이 있나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과정이 있어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중간관리자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중간관리자 과정?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송석준 위원** 특사경도 여기서 받나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특사경은 용인분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디서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용인분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원이 진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분원이 용인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특사경은 다른 부처의 소속으로 돼 있지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부처 직원들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직원들도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자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규모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송석준 위원** 본원이 지금 진천에 있지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분원이 용인?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용인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당초에 있던 거기가 분원으로 바뀌고?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교육시설은 어디가 더 커요?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본원이 훨씬 큅니다.

○**송석준 위원** 본원이? 지금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연수원 전체 직원이 한 230명 정도 됩니다, 공무직 포함해서요.

○**송석준 위원** 분원 포함해서?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송석준 위원** 본원은?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분원 포함해서 그렇고요.

○**송석준 위원** 본원.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본원은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송석준 위원** 로스쿨 지원 교육은 뭐예요? 로스쿨 지원 교육.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전국 로스쿨에 아마 검사 교수님들이 각 강의의 일부 지원으로 출장 교육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여기 진천 본원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로스쿨 관련은 분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분원에서?

○ 법무부법무연수원총무과장 심경보 예.

○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균택 위원님.

○ 박균택 위원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고생들 많지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 박균택 위원 정말 고생이 많고. 제가 거기서 원장을 해 봐서 압니다. 기타운영비 집행도 어떤 사정하에서 집행이 됐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인데 정말 권력적인 요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순수하게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서울과의 출퇴근도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 적막한 지역에 파묻혀서 근무하느라고 애로사항이 참 많은 분들인데 아무튼 너무 고생들 많고 응원하는 마음만 보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법무부차관 이진수 처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더 신경 쓰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준 위원 박 위원님이 거기서 근무하셨어요?

○ 박균택 위원 예.

○ 송석준 위원 여담입니다만 그 옆에 송인공원이라고 있지요, 총무과장님? 거기가 진천 송 씨 시조 묘입니다. 잘 관리 부탁합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회독 했었던 교정본부를 다시 언급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정본부는 이번에 이의가 있어 기관 의견이 있었던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추가보고 하실 건 있으시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없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43번 교정본부의 요구에서 실제 기관별 예산안 및 세부 사업명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차관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구치소와 수원구치소 비목 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이 자료가 있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거짓말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정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제출해 주셨고요 차관님도 이런 비목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 소위원장 장경태 여기에 대해서 제출하셨으니까 저는 시정 요구 정도로 낮출까 하는데, 제 요구는 시정으로 낮출까 하는데 혹시 어떠세요, 단장님?

○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 소위원장 장경태 왜냐하면 제가 알고 물어봤는데 안 주셔서 그랬던 거예요.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무튼 저는 시정으로 일단 낮추겠습니다.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이홍연 예.

○소위원장 장경태 여기에 대해서 기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43번 시정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장에 대한, 독립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결산 업무 자료제출이 없다라고 했었지만 어찌 됐건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도 징계를 철회하고 시정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기관 의견은 어떠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시정으로 하고요.

○송석준 위원 아니, 야당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지.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낮추겠다고 했는데 혹시 낮추는 것 반대하실까 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의견 확인했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제가 기관별 내역 있는 줄 아는데 없다고 답변해서 약간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징계 요구 여당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45번의 과밀 수용 얘기인데요. 이·전용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 2022년부터 24년까지 과밀 수용 완화와 관련된 현재 판결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총 177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상당 예산이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이·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기타직원·개보수 비용 등으로 이·전용을 많이 해서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난감하거든요. 증축 공사, 난방시설 공사하시고 영상시스템 교체 공사하시고 전자경비시스템 공사하시고 외부 단열재 지붕 설치 공사하시고 방수 공사하시고, 이것 참……

그러니까 과밀 수용이 워낙 그 당시 법사위에서 주목되고 또 법무부 현안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갔는데 결국 또 이것을 다 이·전용을…… 그리고 이·전용 규모가 큽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것도 좀 얘기가 안 돼서 과밀 수용에 대해서 기관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주시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지금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말씀 주세요.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 박대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은 과밀 수용 완화 관련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썼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 말고도 수용동 증축과 같은 수용 공간 확충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 부분도 같이 이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내역으로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비목이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과밀 수용 예산으로 매년 한 200억 정도씩 편성되어 있고 또 노후 개보수 예산으로 그동안 한 8년 치 정도를 받아 봤더니 1200억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해당 비목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저희가 기재부에 감사 요구하면 감사받으셔야 될 걸요. 이렇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증축이면 증축, 노후시설 개선이면 개선 그다음에 과밀화 개선이면 개선, 과밀화 개선 정책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 개조물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목이 다른데 이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어떻게 주셨냐면 어차피 과밀이든 노후 시설 개보수든 혹은 증축이든 시설개선사업이든 다 건축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설비사업이라고 간주해서 그걸 다 비목을 이·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이·전용 내역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과밀화 목적으로 쓰셔야지 증축이나 노후시설 개보수하면은 다 그렇게 사용하지요.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공사비 안에 저희들이 세부사업으로 잡혀 있던 것이 과밀 수용 완화 수용 공간 확충 사업하고 그 안에 별도로 노후시설 개보수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보시면 저희들이 100억대하고 200억대하고 구분해서 토클 30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내역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과밀 완화 예산 집행 내역 주셨는데 큰 세목과 세항이 있잖아요.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세목은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공사비에 대한 세목이 편성돼 있었고요. 세항으로 과밀 수용 완화 수용 공간 확충 290억 정도, 그러니까 본예산에 전체 총예산이 669억이 있었고 과밀 수용 완화로 291억이 있고 노후 수용동 기반시설 개보수 세항으로 312억이 있고 기타직원 근무실 관련된 환경 개선 개보수 사업으로 65억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세목이 있는데 세항이라고 해도 세항별로 이·전용을 할 수 없어요. 아마 아주 특정한 요건에 의해서 세세항은 조정이 가능한데 어떻게 세항을 이렇게 이·전용합니까?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지금 저희들이 세항이 아니라 단위사업 안에 세부 내내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제대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설

명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다른 부처는 이렇게 사용 못 하거든요. 저도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과 국토위도 같이 있어 봤고 그런데 그러면 국토위 예산에서 도로건설 예산인데 지방국도 이·전용하고 다 그렇게 쓰지요. 그냥 도로 A계정 예산 B계정으로 다 이·전용하지요.

○**김기표 위원** 지금 문제없다는 취지인가요?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들을 다른 사업으로 집행을 하였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정확히 챙겨 보지 못한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것 사업 코드도 다르지요?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사업 코드는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다 같은 코드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건설비 안에 공사비로 잡혀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무튼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추가로 의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장경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고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고, 지금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노후시설 현대화나 과밀 수용 완화 수용 공간 확충 이런 세항 간에 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시간이 가도, 계속 현법재판소에서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계속 10년이 다 되도록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이렇게 전용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이번 올해 예산부터는 확실히 전용이 안 되게 만드는 예산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좀 보내 주십시오.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예.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저희들이 24년도까지 과밀 수용 완화 수용 공간 확충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올해 2025년도부터는 계속 국회에서도 연례적으로 이월이 된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편성을 25년도부터는 하지 않고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옮겨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이러한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질의 끝나셨나요?

○**이성윤 위원** 예.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코드 1531-302에서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코드 1531-300으로 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관련된 이·전용 내역 있으시지요? 이거 사업코드 이·전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그것은 오전에 차관님이 보고를 드렸듯이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 인원이 갑작스럽게 증가됐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건설비, 공사비에서 불용되는 예산을 기재부 사전승인을 받고 전용 조치를 하였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예산이 아닌 다른 세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전용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기재부 승인받으시고 이·전용하셨다는 거지요?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일단 이것을 징계요구에서 시정조치로 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 의견은, 수용하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시정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원래 다른 부처는 이렇게 운영 안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수용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계속적으로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 했는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전용이 되고 그러면, 물론 기재부 승인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전용이 되니까 몇 년째 과밀수용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지금 과장이랑 실무자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과밀수용에 얼마를 썼고 국회에 와 가지고 예산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이게 전용이 얼마나 됐고 과밀수용에 필요한 돈은 얼마인지, 얼마를 썼고 앞으로 어떨 것인지 계획을 상세히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과밀수용을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뜻이 지금 과장님하고 말다툼, 논쟁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과밀수용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왜 전용을 계속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무슨 승낙을 받았느니 무슨 기금이니 뭐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2018년부터 25년까지 7년간 과밀수용 완화, 수용 공간 확충 본예산으로 1380억이 편성돼 있었고요. 이 예산 중에 노후 수용시설 개보수 등으로 이·전용해서 쓴 예산이 348억입니다. 그러면 1300억 중에 348억이면 상당한 예산을, 사실상 3분의 1까지는 안 되지만 4분의 1 넘는 예산을 이·전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25% 로스 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이백억 단위이고 350억에 달하는 예산을 이·전용하는데 당연히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시정으로 그러면 완화해서, 하지만 국정감사 때나……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예산 심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좀 제대로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네요.

○**법무부복지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6페이지의 퇴직금 사용한 부분은 일단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사용을 하셨으니 시정으로 조치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기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48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의와 제도개선 모두 기관에서는 이의 없음으로 했는데 각각 지적한 사안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교도소 공무직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에 대해서 수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주의로 하고, 제도개선이 포함이 될까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내용이 취지가 거의 같기 때문에 주의만 해서 나머지는 다 문구 정리 차원……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주의로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수정과 관련해서는 위임해 주시고요. 나머지 교정본부 관련된 것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찰국 예산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검찰국 조금 하다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3번입니다, 59페이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교정본부 관련해서 51-2번인데요.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및 인력 충원 방안, 운전직렬 교도관 근무체계 개편 설문,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표, 교정직 공무원 확충 방안 등을 제출할 것을 박은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없습니다만 설문 내용과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표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위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실에 직접 가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근무표 제출을 열람하는 것으로, 열람 말씀이시지요, 서면 제출이 아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열람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지 및 답변 통계와 근무표 제출할 것이란 것을 시정요구에서 제외를 해서요, 이건 제도개선 사안은 아니니까. 차관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 사안

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검찰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9페이지 특활비 부분인데요.

특활비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출하시는 과정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말미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9월 20일까지 다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은정 의원실과 저희의 자료제출 범위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진도가? 아무래도 저희가 예결소위다 보니까 빨리빨리 제출하셨을 것 같고. 좀 다소 진도 차이는 있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박은정 의원님실에도 오늘 저희 실무자가 가서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님실에 먼저 제출이 되었고 일정 협의 과정에서 박은정 의원님실에는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기관이 수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정도 반대……

○법무부차관 이진수 시정요구 단계를 좀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징계를 빼고 시정만 남겨 두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시정만 남겨 주신다면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박은정 위원님께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 23번은 시정으로 시정요구를 조치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24번의 검찰 특경비 관련 자료제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액만 제출하셨는데 특경비는 특활비랑 또 달라서 이 부분도 지금 특활비처럼…… 특활비는 워낙 성격이 다른데 이름도 제출 못 하시겠나요, 특경비도? 특활비는 저희가 1·2·3·4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양보했는데.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수령인 말씀이십니까?

○소위원장 장경태 특경 24번입니다, 요구조치.

그래서 특활비는 숫자로만 제출하셨잖아요, 성명은 밝히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것까지는 수용하겠다고 했고 특경비는 계좌번호 저희가 빼도 이름을…… 특경비는 그냥 상관없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기초해서 24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더 말씀하신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호·업종 정보하고 집행 시각 또 환수 사례 등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수령인 정보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공개 정보로 판단을 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익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숫자로는 다 제출하셨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저희가 카드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장경태**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특활비 관련된 부분 자료 제출한 것은 요청하신 의원실에만 제출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상황과.....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계속해서 특활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범위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당이 돼서 정성호 장관이 취임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의 입장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입장이 정리된다라고 하면 여당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도 제공돼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같은 자료를 저도 한번 판단할 수 있게 관련 판례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의원실, 특히나 예결소위 위원이시면 당연히 제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김기표 위원** 예결소위 위원들은 다 주십시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예결소위 위원들에게 다 제출하시지요, 여기 계신 계신 분들 다 빤히 사정 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자료 요구도 하시고요.

○**김기표 위원** 저희 방에도 전달해 주십시오.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특경비 자료제출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준해서 해 주시고 저도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하겠습니다.

주의에 대해서 혹시 기관 의견 있으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주의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25번입니다. 특경비 관련 변상·징계 권순정 전 수원고검장 관련된 건인데요.

여기서 특경비 98만 원에 대한 부분이고 자료제출과 해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사안인데 변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판단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게 예산사용지침에는 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봐서 변상까지 조치하기에는 해석상 조금 무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당연히 임세진 과장 징계도 반대하시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과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실무 담당 자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렇지요.

사실 저희 특활비·특경비 삭감했을 때 저는 왜 과장이 사퇴 의견을 내시는가 했어요. 특활비·특경비 정도 했으면 대검 차장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 중요했나, 특활비·특경비가?' 할 정도로 참 너무 작은 사임 의사표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을 제가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는 담당 수원고검장이 사직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정도로 낮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만……

○소위원장 장경태 그런데 사안이 어찌됐든 이게 위낙 상징적 사건이고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시다면 저희가 시정까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장경태 예, 말씀하십시오.

○이성윤 위원 수원고검장이 안산지청을 방문해서 안산지청 직원들하고 특정업무경비 98만 원을 사용하는 게 예산지침에는 맞습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때 참석 인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요. 수원고검장이 방문을 해서……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국의 지검장이 이렇게 다 특경비로 사용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게 일선에 지도방문을 해서 수사 현황과 청 내에서의 어떤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도 함께 듣고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산지침 항목상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보기에는 해석상 조금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되냐고요. 아니, 허용된다고 하면 시정도 안 되는 거지요.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 시정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위반되면 위반은 고치겠다 그렇게 해야지 위반도 안 되는데 시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당시에 업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 시점도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한 음주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대해서 지침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잘못 쓴 거지요. 그러면 전국의 지검장들한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리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경태 위원장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검찰국장입니다.

조금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아니, 괜찮아요. 무슨 이렇게 애매하게, 그러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아무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의 지침에 어긋납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보도 많아서요, 많은 분들이 같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업추비 사용하시면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무부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특경비에 다 의존해서 활용을 해 오셨더라고요. 업추비를 실제로 하셨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추비는…… 아니, 검찰 인력, 법무부 인력이 그렇게 많은데 업추비가 감사원보다도 더 적어요, 잘 아시겠지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산편성상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래서 제가 주의까지 낮추기는 어렵고 시정 정도는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시정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명백히 이것 안 된다, 된다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사건 조사해

보셨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건의 간담회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진행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까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재부 지침상 수사활동 관련해서 비공개 간담회로는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가 가지고 밤에 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장경태** 이게 시정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하고 좀 다릅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본인이 위법하다고, 부당하다고 인정을 안 하고……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시정을 수용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나마……

○**이성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각되면 어떡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것은 예산지침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차관님 말씀이 예산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정을 해요?

○**소위원장 장경태**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내년도 예산에 특경비 줄이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서 예산 신청하는 것 지금 어떻게, 편성이 제대로 됐습니까, 내년 예산안에?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제출은 저희가 법무부에 오기 전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안 되어 있는……

○**박균택 위원** 그러면 과거처럼 특경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군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가을에 예산심의할 때 그걸 그냥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낫겠어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특경비가 오히려 과거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할 부분을 사실상 특경비로 대체해서 썼던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행적으로?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박균택 위원** 그래서 빨리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이런 시비를 없애고 좋은 길일 것 같습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김기표 위원** 관행적인 면도 있고 하니까 시정으로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시정으로. 25번은 제가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27번입니다. 김기표 위원님과 이성윤·주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일단 김기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국외훈련비 집행자료 공개가 어려우신가요? 64페이지 27번입니다, 검사 국외훈련비.

○법무부차관 이진수 관련된 자료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김기표 위원 이건 철회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소위원장 장경태 철회해도 되고 주의 하셔도 되고 제도개선하셔도 되고 그것은 판단하시면……

○김기표 위원 지금까지 제출됐으니까 제도개선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의까지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은 제도개선으로 하셨고요.

지금 이성윤·주진우 위원님이 하셨던 것들이 학자금, 체재비를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춰라 요구했는데 이게 작년 결산심사 때도 아마 지적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검사가 법관보다도 높다, 학자금 비용이라든지 체재비.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요.

○김기표 위원 제가 아까 제도개선했는데 주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의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주진우 위원님 지적사항, 제도개선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는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김기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표 위원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기표 위원 할 수 있는 자료는 언제든지 제출하라는 의미로 주의로 수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여러 가지 전향적으로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주의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예, 다음에는 가능한 자료는 내도록 하시는 걸로.

○이성윤 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검사들이 국외연수를 마치고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법무연수원의 이정현 검사장을 논문을 안 썼다 해 가지고 징계까지 했더라고요.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성윤 위원 국내에 있는 사람이 논문을 안 쓴 것도 당연히 징계를 했는데, 논문 심사 표절한 검사들이 작년에 있었지요? 작년에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해 줬습니다.

두 번째, 이런 자료는 결국 국내에서 정말 밤을 새워 가면서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국외에 있으면서 조대로 논문 제때제때 보고해야 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 결과물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제출 안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표절률이 높아 가지고 문제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런데 왜 이걸 제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제출 안 하면 징계하십시오. 국내 연수 중인 검사장에 대해서 징계 1개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외훈련 1년 갔다 오고 더 군다나 여비까지 6만 달러 줘 가지고 갔다 온 사람이 어떤 논문을 썼는지, 과연 표절했는지, 제대로 연구를 했는지 국회에서 보겠다는데 왜 자료를 안 냅니까?

그리고 분명히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 심사를 하셔 가지고 엄중히 좀 다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법무연수원에 근무 중인 검사장을 징계한 사건이에요, 논문 안 냈다 해 가지고.

○소위원장 장경태 맞습니다. 형평성은……

그런데 그 징계 확정됐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는 확정됐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무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단 김기표 위원님의 주의 의견은 수용하시고. 같은 내용이니까, 주의 수용하시기로 했었으니까……

○김기표 위원 하나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소위원장 장경태 예, 하나로. 내용이 같기는 해서.

○김기표 위원 이성윤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도개선 의견이시지요?

○이성윤 위원 제도개선 작년에도 했는데 참……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왜 법무부는 시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기표 위원 주진우 위원님도 제도개선 위원이시고?

○주진우 위원 예.

○김기표 위원 두 분이 제도개선 위원이시면 저도 제도개선 위원으로 양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27번은 제도개선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수용하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28번입니다. 감찰 국외훈련비 관련된 부당사용자들에 대한 조치인데요.

환수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자료를 너무 안 주시려고 하다가 어찌 되었건 이 환수 조치에 대해, 부당하게 국외훈련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환수잖아요. 환수 자체가 부당사용자들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 잘못 썼네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닌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절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서 16건을 저희가 판단해서 환수 조치를 했고요. 이렇게 환수 조치한 대상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자료 등으로 보존을 해서 여러 가지 인사 등에 반영 요소로 삼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건을 이유로 해 가지고 징계까지 한 타 기관 사례도 좀 찾아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강력한 주의를 주시고요. 제도개선도 한다고 그러니까 넘어가 주시지요.

○김기표 위원 저도 감찰, 징계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과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걸 좀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면 감찰, 징계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환수대상자에 대한 적극

조치를 취할 것' 해서 시정요구는 어떠세요? 제가 이 시정요구안에 감찰과 징계라는 표현을 빼겠습니다. 그것은 어떠세요?

○송석준 위원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용하신 건 맞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치는 뭔가 의미 있는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걸 자체 마련하라고 제가 권고하는 거거든요.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찰, 징계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환수대상자에 대한 적극 조치를 취할 것' 해서 시정 조치 이렇게……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81페이지 36번이 주의가 있고요 부처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왔습니다.

이 형사보상금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님께서는 다른 사업 이·전용으로 형사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요구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일단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제도개선이 좋다는 송석준 위원님 말씀이신가요?

○송석준 위원 예.

○소위원장 장경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여기 '의견이 있음'이 어떤 의의제였습니까? 주의는 받을 만도 할 것 같은데 왜……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좀 요청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제도개선으로?

○김기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형사보상금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전용해 왔다는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잖아요. 형사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죄 난 것에 대해서, 맞습니까? 무죄 난 것에 대해서 구속, 불구속 조금 차이가 있고. 그것을 했다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피고인·피해자의 구금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처음 책정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예측 잘못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지급해야 될 돈이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이 예측 부분이 과거사 사건이 78%를 차지하는데 당사자 신청과 법원 선고 또한 거기에 대한 형사보상금에 대한 결정도 법원에서 언제 선고될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160억 상당을 증액 요청했습니다만……

○김기표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예정하는 것은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저는 주의까지는 좀……

○**소위원장 장경태** 저희가 아마 작년 예산심사 때도 형사보상금 증가 빈도가 높아졌다
고 해서 좀 증액은 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아직, 내년 결산할 때 나오겠지요.

○**김기표 위원** 이것은 지금 안 할 것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조금
낮춰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사보상금이 많이 나가는데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형사보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무죄비용보상의 경
우에는 5년간 2000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과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가가 합법적으로 폭력을 가한 거예요. 검사들 재판 한번 받아 보시라고 하십
시오. 이게 2000건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죄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정확
하게 수사해서 증거 있는 것만 기소를 해야지 그렇게 조작 수사해서 기소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무죄비용보상은 너무 적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4년간 재판받아
보십시오. 받았는데 비용보상으로 1심에 200만 원 줍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그 피고
인의 고통을 생각해 가지고…… 국가에서 폭력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 재판 한번 받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소해 가지고 무죄 나온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
을 생각해서 비용 보상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기표 위원** 제도개선 정도로.

○**소위원장 장경태** 제도개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찰청 운영 인건비 부분입니다. 58억 불용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했는데요. 아
무튼 인건비 예산편성을 더 내실화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검찰청 운영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검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대
해서 제가 제도개선을 했었는데요, 철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세트여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 정도로 종합적으로 수용하시면 어떠실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그냥 제도를 개선하겠다, 보완점이 있다 이 정도만 인정하
는 거거든요. 제도상 보완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근거는 남기는 겁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철회하는 것과 제도개선을 남
기는 것과는, 작년에 이런 언급이 있었다라는 것이라고요. 주의는 그래도 좀 더 주의를 기
울여야 된다는 것이고 시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좀 달
라서 제가 제도개선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넘어가
기에는 또 저희도 좀 그래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이번 인사에도 35석 중에 7석의 파견을 줄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중앙지검에 몰린 검사들 이제 다시 원복하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지금 직무대리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원청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38번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없네요. 다 끝났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법무부 다 끝난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법무부 소관 결산 최종 정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 7건, 주의 7건, 제도개선 43건이었고요. 총 57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202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이어서 감사원 소관 논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수용하고 있으니까요 부처에서 수용을 해 주시면 빠르게 논의될 것 같고 또 특활비·특경비 내역 제출에 대해서 9월 20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아마 저녁을 먹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논의를 빠르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셨던 부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15번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 G20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일단 넘기고 가겠습니다. 이것 말고 예비비·특활비 얘기가 남았었지요?

○이성윤 위원 몇 번입니까?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 5번에 결산 감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 의견이 수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신 거잖아요, 기관 의견?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 그러니까요. 시정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남은 게 15번에 G20 감사원장회의에 대해서 장경태 위원은 징계 요구, 김기표 위원은 시정 요구, 박근택·송석준 위원은 주의 요구였습니다.

아, 이전에 아까 4번 얘기하셨던 것 있지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에 있는 결산검사 시에 세수결손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문구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감사원은 국회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세수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이 최근 2년간, 2023·2024회계년도 세수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없다면 우리 법사위에서 과도한 세수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대한 시정 요구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 재검토 대상이 지난 2년간의 세수결손, 그러니까 2023년·2024년에 대한 결손인지를 저희한테 분명하게 워딩을 주셔야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의결을 하시더라도 예결위에 보낼 때는 저희가 단서를 붙여서 감사 요구가 없는 경우에 채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25년 결산보고서에서 과도한 세수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보다는 명확하게 ‘2023·2024회계년도 세수결손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대한 조치 등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굉장히 훌륭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장경태** 일단 김기표·박균택 위원님 의견 주시고요.

그 문구 수정에 대해서 일단 부처 의견은 없으시지요?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문구 수정은 그렇게 하시고.

○**소위원장 장경태** 문구 수정하시고, 그러면 기관 의견도 수용하시는 건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그려면 4번은 넘어가도록……

○**김기표 위원** 아니, 그런데 시정과 주의 중에 골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혜진** 예, 시정과 주의 중에 채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시정을 수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수용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박혜진** 그러면 시정으로……

○**소위원장 장경태** 예, 시정으로.

○**김기표 위원** 수용하면 시정으로 하시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위원장님, 그리고 9번하고 10번도 시정요구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두 가지 있었지요?

○**전문위원 박혜진** 예.

○**소위원장 장경태** 그런데 9번은 주의를 수용하셨기 때문에 주의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도 박균택 위원님은 주의, 김기표 위원님은 제도개선인데 일단 주의로……

○**김기표 위원** 예, 의견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마지막, 24페이지에 있는 15번입니다.

감사원장의 국외 출장에 대한 이·전용에 대해서, 저는 어찌 됐건 이 이·전용 내역은 사실 전 사무총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실무자 분들이 결정하셨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혹시 여기에다가 부대의견을 달 수 있나요? 징계 요구에 대해서 실무자가 아닌 실무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로?

○전문위원 박혜진 그 징계 요구 안건에 문구를 명확히 하시는 게……

○소위원장 장경태 예, 그 문구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그러면 그 문구를 어떻게……

○소위원장 장경태 예를 들면 ‘국가재정법을 위배한 예산집행을 결정한 자를 징계할 것’, 관여한 자는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고요, 결정 결정한 자?

○김기표 위원 국가재정법을 위배한 예산집행의, 그러니까 최종 결정한 자만 할 것인지, 결정에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장경태 예산집행의 최종 결정권은 감사원장에게 있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감사원장을 징계해야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장경태 예.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아까도 건의를 드렸듯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 사업은 예산의 내역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원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좀 불가피한 측면에서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집행 절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이나 관련 예산집행지침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전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심의회라고 거기에서도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고 또 이번 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원장님께서도 경비 부분에 대한 절감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고 그것은 아까 의원실에 가서 위원님께도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 노력을 좀 많이 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기조실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셨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법무부 간부도 징계 요구를 하려다가 마지막에 이·전용과 관련돼서 기재부 승인받은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기재부의 승인 내역 없으시지요? 이·전용할 때 승인받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이것은 저희 자체 전용 대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런데 그 자체 전용 예산심의위원장이 지금 기조실장님 아니신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요. 자체에서 결정해서 한 것은, 다 그렇게 했지요. 법무부도 그렇게 했고 검찰도 다 그렇게 했어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기재부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자체 전용 대상이라서 제 책임하에서 저희가 내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하나만……

○**소위원장 장경태**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실장님, 만일에 피감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앞으로 감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삭감되고 없었던 예산을 쓴 겁니다. 그러면 남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의 입장에서 보면 한 치도 잘못된 것이 없어야 돼요. 법 위반이 없어야 되고 정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감사원만 봐주면 나머지 기관은 괜찮다, 감사원은 봐주고 나머지 기관은 추상같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피감기관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힘도 없는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감사원은 어떻게 감사 결과를 내놓을 겁니까? 징계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감사원이 전 부처를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원은 누구든지 간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 왜 감사원에는 관대하고 다른 부처에는 엄혹하게 합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더 유념해서 집행을 하는 데 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다른 부처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힘없는 부처라면 물어봤잖아요.

○**김기표 위원** 그게 비목이 다른 예산 전용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말해 보시지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G20, SAI20회의는 국외여비 목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국외여비 예산으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국외여비가 좀 부족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기표 위원** 국외여비 예산으로 하는데 그 끝에 다 쓴 국외여비가 그래도 부족하더라?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국외여비 예산으로 집행을 하니까 국외여비 예산이 아무래도……

○**김기표 위원** 그것 자체가 부족해졌다고요, 원래 써야 될 국외여비 예산이?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가지고 왔는데……

○**김기표 위원** 세목이 다른?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큰 여비의 목 안에 국외여비, 국내여비……

○**김기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런 분류가 큰 범위 안의 같은 여비의 목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아예 사업 코드가 다른 것 아니에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코드가 달라도……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안 다 볼 때 세목, 세항, 세세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예산에 아시아 감사원장회의비로, 비목도 없는 감사원장회의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기재부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한 것이고 국내여비 비목은 국내 기본경비 예산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감사활동 기본경비가 있고, 감사원이 국내여비가 2개가 있잖아요. 실장님, 저희가 예산심사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똑같이 국내여비가 일반 국내여비가 있고 감사활동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런데 감사원장의 국내여비는 아예 비목이 다르지요. 감사활동의 국내여비는 감사관들이 쓰는 예산이지 감사원장이 쓰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왜 이 사업 코드까지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목도 다른 예산을 쓰셔 가지고 국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고요. 이 세목을 벗어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부 승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게 국내여비가 220-01목입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가 220-02목인데요. 이것은 분류 중에서 아주 세세한 분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예산집행지침상 분류가 좀 많이 다를 때 이럴 때는 기재부 승인을 받게 돼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용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 자체적으로 이·전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명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자체 전용 하시면 기재부에 송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송부하신……

○소위원장 장경태 기재부에 송부한 공문 있어요? 그것 제출해 달라고요.

아까 법무부도 기재부 승인받은 송부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출을 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계속 자체 승인할 수 있다, 자체 승인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는 자체 승인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법률 검토 다 하지요.

지금 저희가 감사원 실무자분들하고 논쟁할 것은 아니고 국회가 판단하기에 징계에 준하는 시정요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기재부에 승인 요청하신 적 있나요?

○감사원기획담당관 김동진 전용 내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재부하고 국회에도 예결위에 통보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통보 말고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사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하는 것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예산집행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목이 크게 물건비인데요. 200목 중에서 210·220·230부터 260까지로 돼 있는데 220목이 여비입니다. 220목이 여비인데 상호 간 자체 전용 가능이라고 이렇게 예산집행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감사활동 국내 여비를 이전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국내 여비

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 분 누구시지요, 실례지만?

○감사원기획담당관 김동진 기획담당관 김동진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기획담당관님, 지금 국내 여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감사활동 국내 여비가 있고 하나가 뭐였지요? 정확한 워딩을 알려 주세요, 제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감사원기획담당관 김동진 기본경비 안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제가 확인할 때,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감사활동에 따른 기본경비가 있고 일반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있었거든요. 감사활동에 따른 기본경비 또 일반운영에 관한 기본경비가 있었어요, 감사원이. 기본경비가 2개 세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원기획담당관 김동진 지금 저희가 구분이 기본경비 그리고 주요 사업비 안에 감사활동경비, 국제교류협력강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 기본경비 안에도 국내 여비가 있고 감사활동경비 안에도 국내 여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 안에는 국외여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210 항목에서 서로 이전해 갔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220목 내에서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220목 내에서 지금 예산을 가져다 쓴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요, 감사원은?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실제 사실 관계도 220목 내에서 썼고 220목 내에서 220-1인지 2인지에 관계없이 거기서 상호 간에 쓰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회의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그렇게 했다는 주장인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사실상 절차를 다 거쳤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기표 위원 그러면 절차상 아무 하자도 없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절차상 문제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장경태 기재부에서 송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송부 자료. 그걸 진작 제출해 주셔야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산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게 탄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잠깐만요. 원래 예산의 항목이 없는 것을 쓴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 전용하는 행위는 모두 절차를 거쳤으니 절차상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전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예외를 규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운영할 때 좀 더 계획부터 잘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또 전용에 따르는 절차도 규정에 따라서 준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계에 대한 책임만큼은 좀 재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제가 이거 전체회의 때 지적한 거 들으셨지요? 감사원장과 기조실장님 발언석 세워서 지적했었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소위원장 장경태 그런데 기재부 승인 내역을 제출 안 하셔서 이제 제출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제가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장님한테 지적하고 심지어 기조실장님 발언석 세워서까지 지적을 했고 지금도 이거 계속 문제가 돼서 오전에 이거 지적했는데 아무 문제없다, 아무 문제없다 하다가 사후적으로 기재부 승인 내역 제출했다, 본인이 예산집행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 있는 데서 자체 결정해서?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동의합니까? 아무튼 저희는 의원실에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1~2분 내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안 되시지요? 제출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 회의 산회 이후에 제출하신 거는 제출 안 하신 거예요. 1~2분 내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얘기해서, 기재부 승인받아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이 사안 자체는 사전에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장경태 사후적으로 제출하셨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사후에 전용이 있게 되면 전용 내역들을 기재부에 이렇게 제출하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내역을 통보하고 하는데 그 서류는 저희가 최대한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사후적인 통보는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사후적인 통보를 언제 했지요? 바로 하고 했나요? 시기가 언제인데요, 사후적인 통보?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거는 매 분기에 묶어서 정기적으로……

○김기표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묶어서 정기적으로 할 때 했다는 거예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전체회의 때 감사원장님께서 질의드리고 오전에도 질의드리고 오후에……

○김기표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진짜?

○이성윤 위원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 때 감사원장 앞에서 또 그때 누구지요, 기조실장님인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이성윤 위원** 세워 놓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저는 정확히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이 정도, 이미 국회에서 삭감된 걸 알면서도 또 그 후에 증액하는 논의를 전혀 안 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감사원이니까 마구잡이로 진짜 오만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피감기관에 감사원이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징계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 때 분명히 문제 삼았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 삼아야 되고요. 이게 명확하게 해명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징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아무튼 지금 자체 전용이 가능한 세양이다, 비목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자체 전용을 해도 사후 승인받아야 됩니다. 아시지요? 사후 제출해야 돼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사후 승인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장경태** 제출입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이게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디브레인으로 곧바로 전산상으로는 통보가 되고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공문으로 그 내역을 묶어서 통보를 하는데, 분기 말에 묶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행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지금 자료제출까지 한 5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각 19시 12분인데요. 19시 17분까지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경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검토도 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세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당 G20 감사원장 회의는 이미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반려한 사업이고 또 정부에서도 예산을 비목조차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무단으로 무리하게 아시아감사원장회의 예산을 이전용해서 먼저 선집행하고 또 해당 감사원장 예산이 부족해진 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 예산에서 이전용하는 등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을 형해화하고 또 그동안 감사원의 예산편성 과정이 자체 세목, 세항들을 다 뭉뚱그려서 합쳐서 해 왔던 과거 선례를 비춰 봤을 때 저희가 올해 예산심사에서는 모든 세목과 비목에 대한 세항들을 좀 나눠서 편성하실 것을 권하면서 저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는 수정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재정법을 위배한 예산 집행에 최종 결정한 자를 징계할 것, ‘최종 결정한 자’로 문구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셔도 됩니다. 반대하신다고……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아까 누차 제가 위원님께 건의를 드렸듯이 징계는 좀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저희 의견이고요. 최종 결정한 자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기조실에서, 국외출장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서 기안해서 원장님 결정으로 가시게 되는 부분이고요. 사후의 전용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지적이 두 가지 포인트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계획에 없던 출장을 가게 되었다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전용이 문제 있다 하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큰 틀에서 어쨌든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에 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향후 예산 집행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사실은 규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방금 얘기하는 게 감사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국외출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요. 출장에 대해서 보고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국회 예산심사를 할 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진 것 그것도 지금 감사원장이 알고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모르고 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김기표 위원** 아니지요. 그게 지금 국외출장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때 논쟁이 되고 예산 삭감이 뭐가 됐다는 걸 보고를 안 받습니까?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안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을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허락을 한 거고 결재를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했어요? 지금 예산이 없는 거를 간다는 걸 모르고 결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때요? 지금 그거에 대해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에 내역으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김기표 위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걸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고 제가 그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 과정에서 깜였던 것을 알고도 지금 국외출장 결재가 넘어왔고 감사원장이 결재를 했냐고 묻잖아요. 그걸 대답을 해야지, 지금 다른 얘기를 해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기표 위원** 아니, 답을……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한 부분을 간다는 것을 알고 결재했느냐고 묻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요. 실무적인 거야 당연히 실무자가 하는 거지.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쓰고 이렇게 보고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기표 위원**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산 삭감된, 예산을 국회에서 허가하지 않은 부분, 즉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해외로, G20인가요? 거기 가는 것이 예산이 삭감돼서 못 가게 됐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결재를 했냐고 묻잖아요. 그 방법은 실무진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묻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원장님께서 세세하게 예산의 그 내용까지는……

○김기표 위원 아니, 예산을 어떻게 전용하는지를 원장이 알 필요 없지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그건 못 가게 삭감됐다는 걸 알고 결재한 것은 맞지요? 그걸 묻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하세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출장을 결정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따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기표 위원 당연히 보고는 안 하지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난리 났을 것 아니에요? 그때 예산 깎아서 애네들이 왜 예산 깎았느냐 하고 말도 다 했겠지, 그거를 아니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뭐 하러 서로 얘기합니까, 깎인 것 다 알고 보고하는데?

○소위원장 장경태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시정요구 문구를 좀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감사원은 국가재정법을 위배하여 국회의 예산 삭감과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국외출장을 하였고 국내여비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이전용한 것에 대해 예산 집행의 최종 결정권자를 징계할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국내여비 예산을 국외출장으로 이전용한 것’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 수정을 좀 매끄럽게 해 주시고요. 일단 이 안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 약간 논쟁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거 잘 모르고 제출하셨다고 저는 선의로 믿고 싶은데 만약에 이거 보고 ‘아, 옳다구나’ 하고 했으면 그것도 좀 그렇고요.

○전문위원 박혜진 저희 총괄표의 1번하고 6번 보시면 지금 제도개선 사항을 위원님들이 2건씩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제도개선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구를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1번 성과지표 추가와……

○전문위원 박혜진 1번하고 6번 국민감사청구제도 관0련 홍보비 관련해서 똑같은 제도개선 요구시라 저희가 합쳐서……

○소위원장 장경태 1번의 박근택 위원님의 제도개선 제안과 6번의 김기표·장경태·이성윤·주진우 위원님의 제도개선 제안에 대해서 문구 수정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지금까지 감사원 소관 결산 논의사항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16건으로 정계 1건, 시정 2건, 주의 2건, 제도개선 1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

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해식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11시 반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검찰·법무부 할 때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감사원도 사실 많이 양보를 했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또 양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등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기관 공무원,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기표 박군택 박준태 송석준 이성윤 장경태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황해식

법무부

차관 이진수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검찰국장 성상현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법제처

차장 김창범

기획조정관 최영찬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차장 김용호

임시회의록